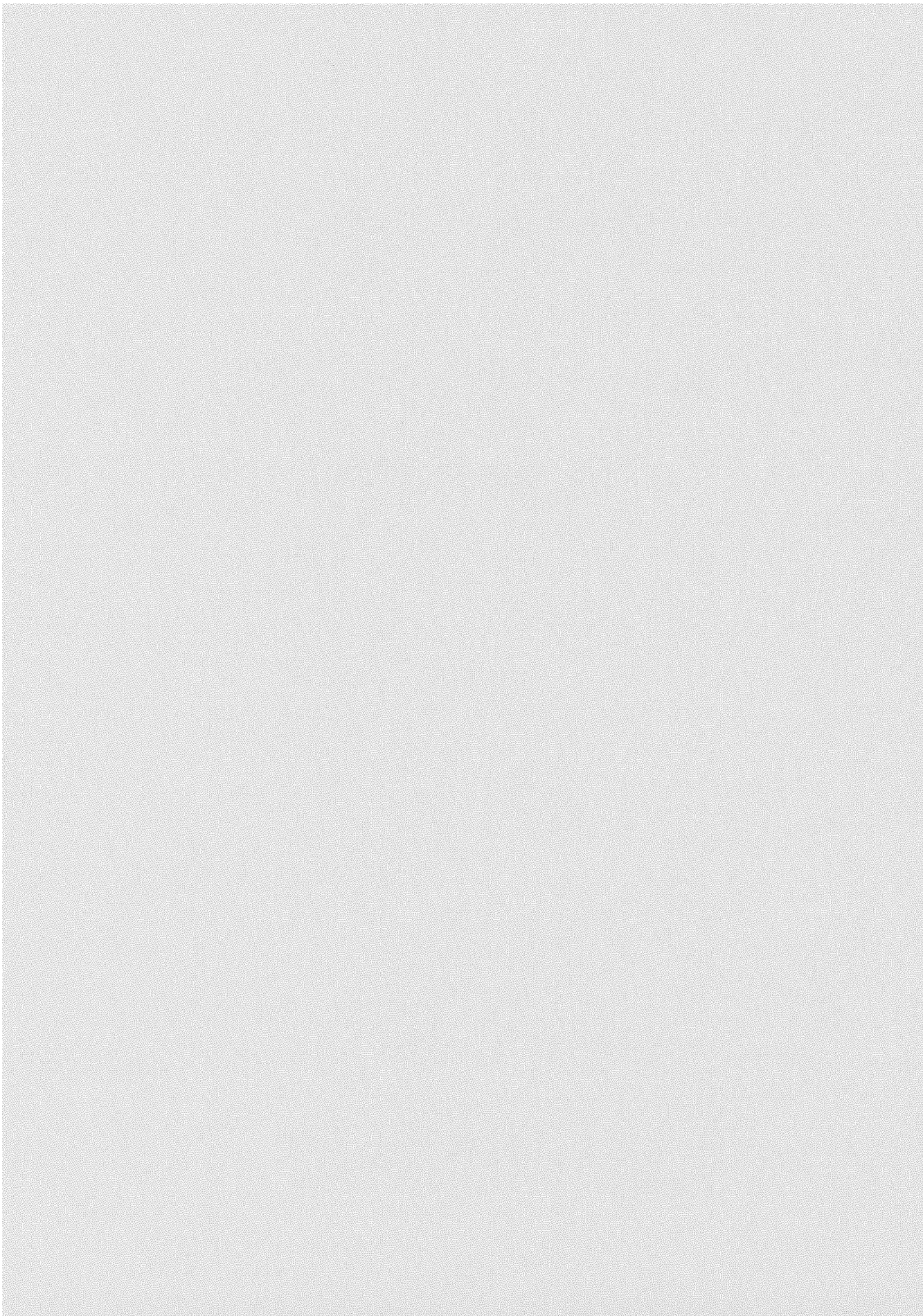


第15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9.22. ~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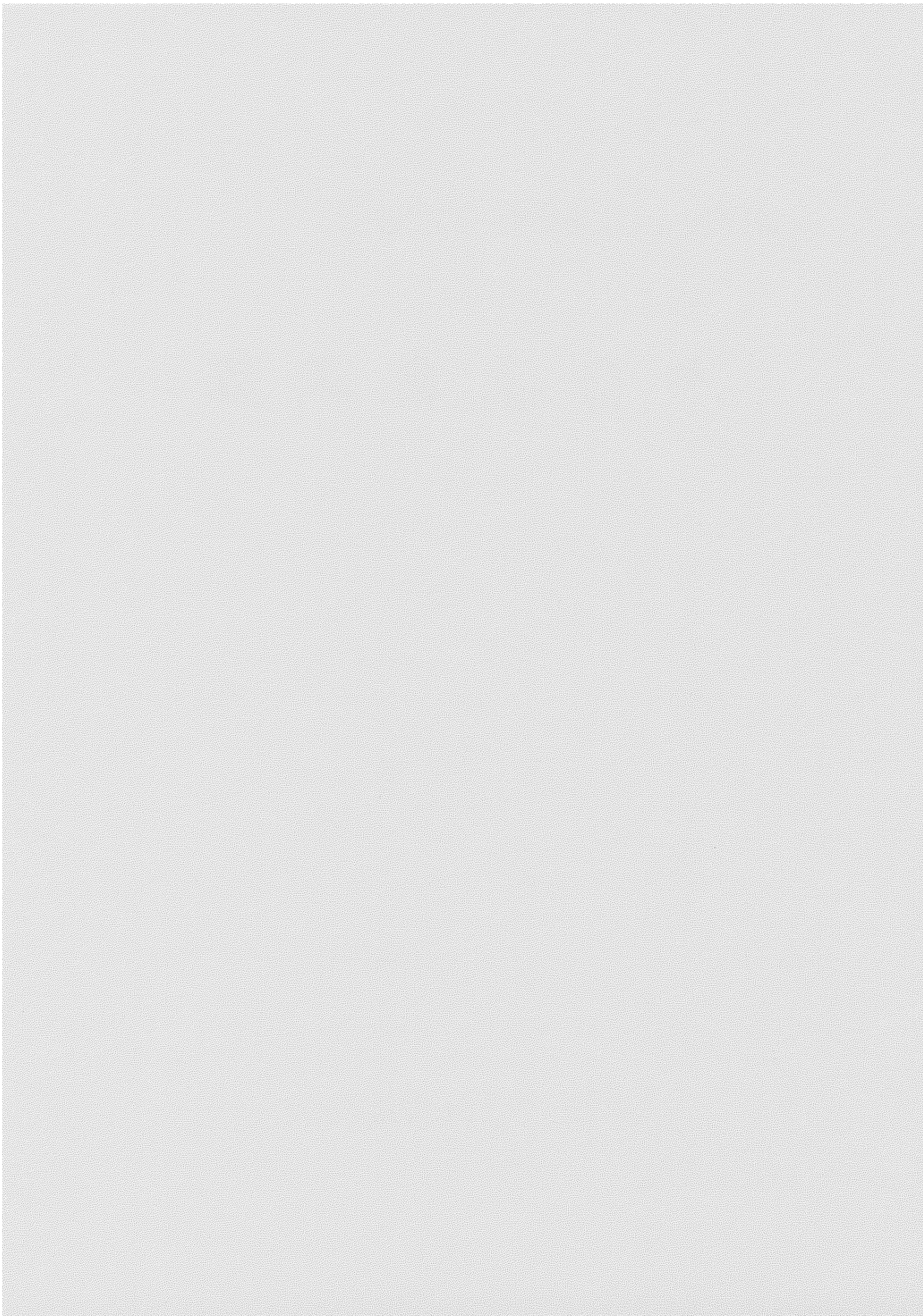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31
II.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33
III.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4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49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1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159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9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71
6.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7
V. 별책부록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2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5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2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6.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7.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제156회-제1차 본회의]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위한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2003년 9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9월 13일 공고 제2003-8호로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집행청 제출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향과 목표가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

혁신 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원활한 연계 협조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중 한시정원을 6명에서 9명으로 3명 증원하고, 부칙에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위하여 창신초등학교 외 2교의 다목적실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아 건립하고, 유치원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를 독립유치원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

[제156회-제1차 본회의]

성과 학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천고등학교 기숙사 999㎡를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천농업고등학교의 특별교실과 화장실 등 900㎡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가격은 총 6교에 52억 2,760만원으로써 제천고등학교 생활관 기부채납분 10억원을 제외한 42억 2,760만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 참 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다목적교실 확보, 유아교육시설 및 급식시설 현대화,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

조 716억 1,400만원에서 3.5%인 37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조 1,09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 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32억 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 5,400만원, 공무원인건비 10억 7,000만원, 교육시스템 추진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1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 개축비 38억 6,600만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비 75억 5,0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비 55억 5,800만원, 유치원 단독원사 신축비 등에 7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 실험실과 발명공작실 설치비 11억 3,000만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6억 5,300만원,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25억 800만원, 시책사업 추진과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18억 100만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에 4억 3,0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끝에 실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안건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앙정부 내 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업무연계·협조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한 공무원 3명을 증원,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시정원 6명을 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문 내용이 간단한 바,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에

[제156회-제1차 본회의]

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소위원회구성건

(11시 1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감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감사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청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에서 수립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별첨 3)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 별 책 부 록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6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감사소위원회위원장)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교육감 제출)
4.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수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전국 시·도 기획관리국장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할

또한,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은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 관계로,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연구학교발표회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01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고규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고규강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승인 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발의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 200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며,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그 일정별 대상기관은 10월 17일 충주교육청, 10월 18일 영동, 단양교육청, 10월 20일 청주교육청,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 개정 조문 내용이 간단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취득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9월 1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쪽의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기준은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16억 1,382만 7,000원보다 379억 9,249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096억 6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97억 4,758만 8,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2억 2,908만 8,000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억 9,581만 9,000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별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287억 3,414만 2,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3억 8,582만원, 급여·복지에 10억 7,000만원, 교

육행정에 13억 1,376만 8,000원, 기타 경비 64억 8,8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실개축, 다목적교실 확보, 유아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교육활동 지원 등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법적·사실적 요건을 구비하여 합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 병설유치원 급식 지원 기탁금 1억 3,727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겠습

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예산총계 주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세입이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자녀 중식 및 학비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조회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학교 규모별 예산편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회에 한하여 집행시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집행하고 향후 시설비 기준단가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할 것을 촉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심사자료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6회-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우리 도에서 18개 작품을 출품하여 최우수 1개, 특상 6개, 우수상 8개, 장려상 3개를 획득하여 선진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 실적을 전국에 거양한 데 대하여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그리고 입상자 여러분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전년도 체전에서 일궈낸 메달 순위 고등부 전국 3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별첨 5)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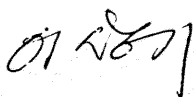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0. .

의 장 이 상 일 

위 원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이사국장 이 상 기 

議 事 日 程 (案)

第156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9. 22. ~ 9. 26.(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월 22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3. 9. 22. ~ 9. 26.(5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6.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 감사소위원회	
9월 23일(화) ~ 9월 25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 감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9월 26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56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3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156-1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09.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 이유

-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연계·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설치·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 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기존 6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
-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개정 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운영 관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 [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561 ('03. 8.26)]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시정원은 6명”을 “한시정원은 9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고 사항

I.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한시정원)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u>6명</u>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한시정원) <u>한시정원은 9명</u></p>

II.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

<p>목 표</p>	<p>학교·교실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 自生的 活力(Vitality)을 통한 현장으로부터의 교육개혁 추진</p>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한 자율운영 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지침 정비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위임과제 발굴 -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지원과제 발굴 ▶ 학교·교실 중심의 개혁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부 순으로 상향식 조직진단 -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조직개편,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정책개발 평가, 감사 / 시·도: 기획기능 / 지역청: 학교지원 기능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기구·인력 적정규모 모색 	
<p>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대학·컨설팅기관 등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연구 컨소시엄" 구성 ●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조 ●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기관의 준비도 및 수용능력 제고로 혁신 추진력 극대화 	
<p>단계별 추진계획</p>	<p>1 단계 ('08. 7~'04.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조직 진단 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진단 실시 ·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p>2 단계 ('01. 6~'05.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지침 정비 및 권한의 이양·위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학교·교육행정기관의 기능·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 등 개정 추진 · 학교·교육행정기관의 기능·조직개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3.1 시행 계획 	

Ⅲ.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9516호)

-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②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25호)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 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

②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46-2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9월 13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의안	156-2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09.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취득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추정금액 (천 원)
건 물	창신초외 5교	다목적교실 신축외5건	5,668㎡	5,227,607

제안 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참고 사항

- 건물 취득 배치도 6부 : 붙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특 취 득	계	토지								
		건물			6	5,668	5,227,607	6	5,668	5,227,607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6	5,668	5,227,607	6	5,668	5,227,607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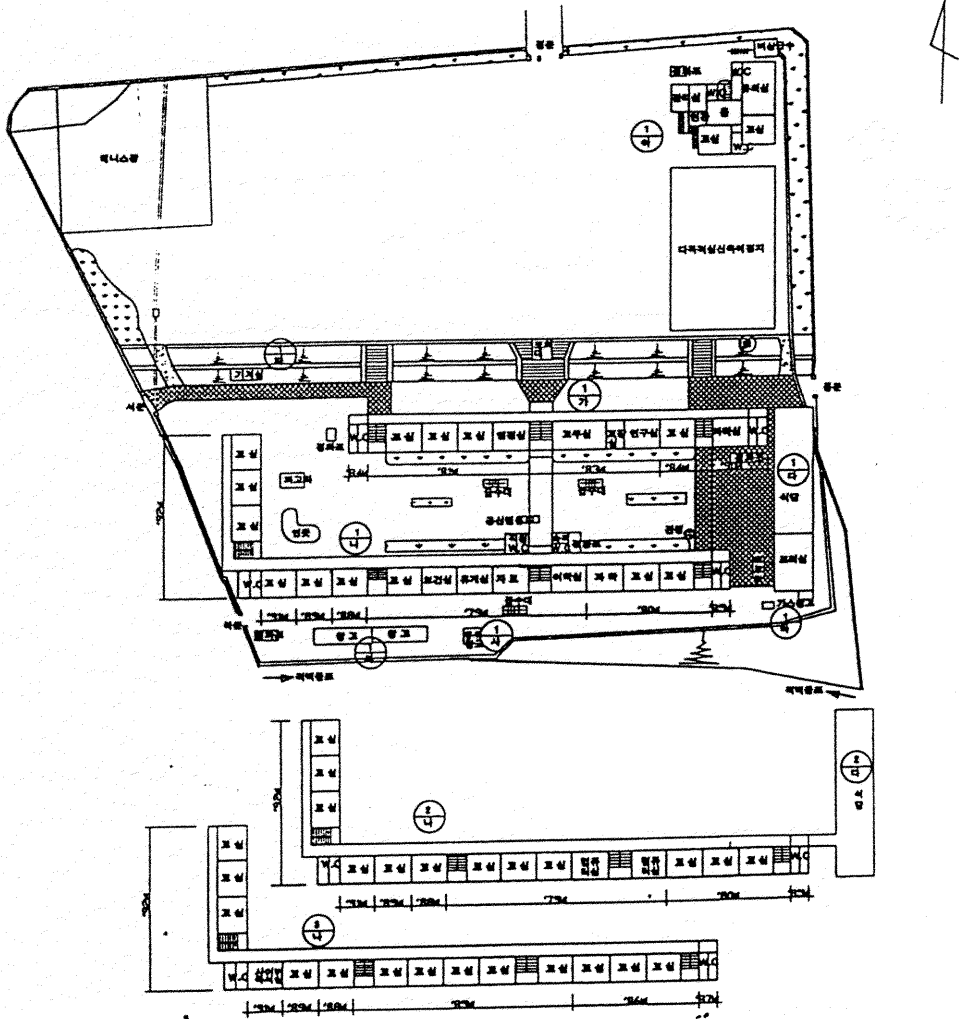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창신초	건물 (다목적실)	사창동 351	1,242	1,100,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쪽
옥산초	건물 (유치원사)	오산리 223	685	632,957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2쪽
삼산초	건물 (다목적실)	삼산리 120-2	978	890,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3쪽
매곡초	건물 (다목적실)	노천리 54	864	770,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4쪽
제천고	건물 (생활관)	청전동 144-10	999	1,000,000	하반기	기부채납	교육감	5쪽
제천농고	건물 (교실외)	동현동 15-3	900	834,65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6쪽
계			5,668	5,227,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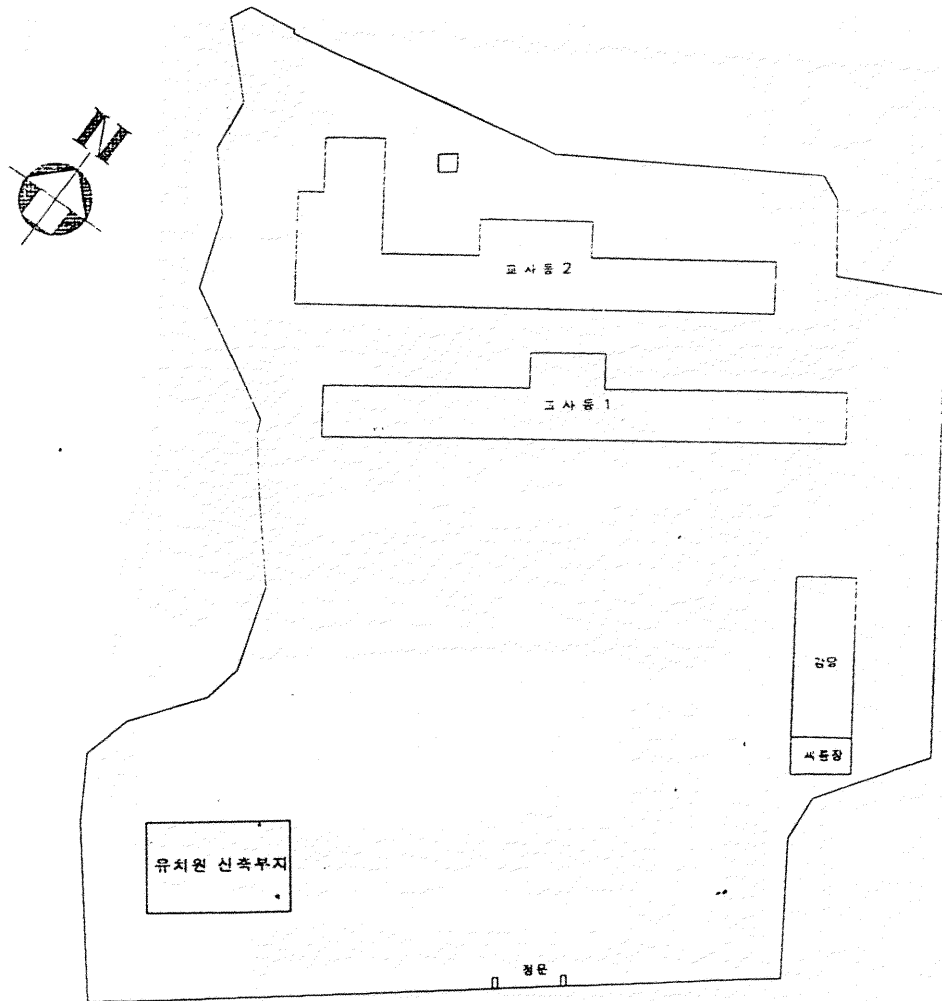
(1) 창신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사창동	351	철콘라멘	1,242	1,100,000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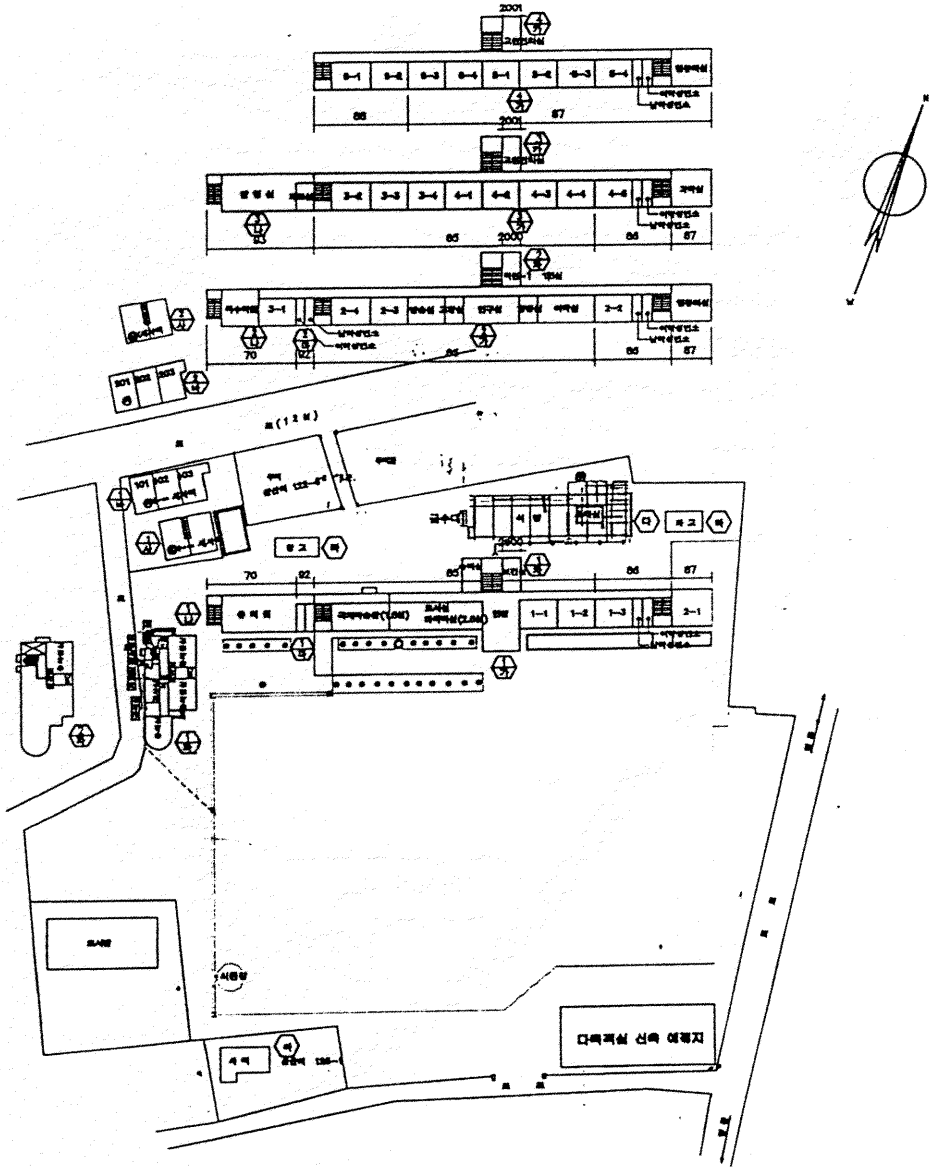
(2) 옥산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유치원사	오산리	223	철콘슬	685	632,957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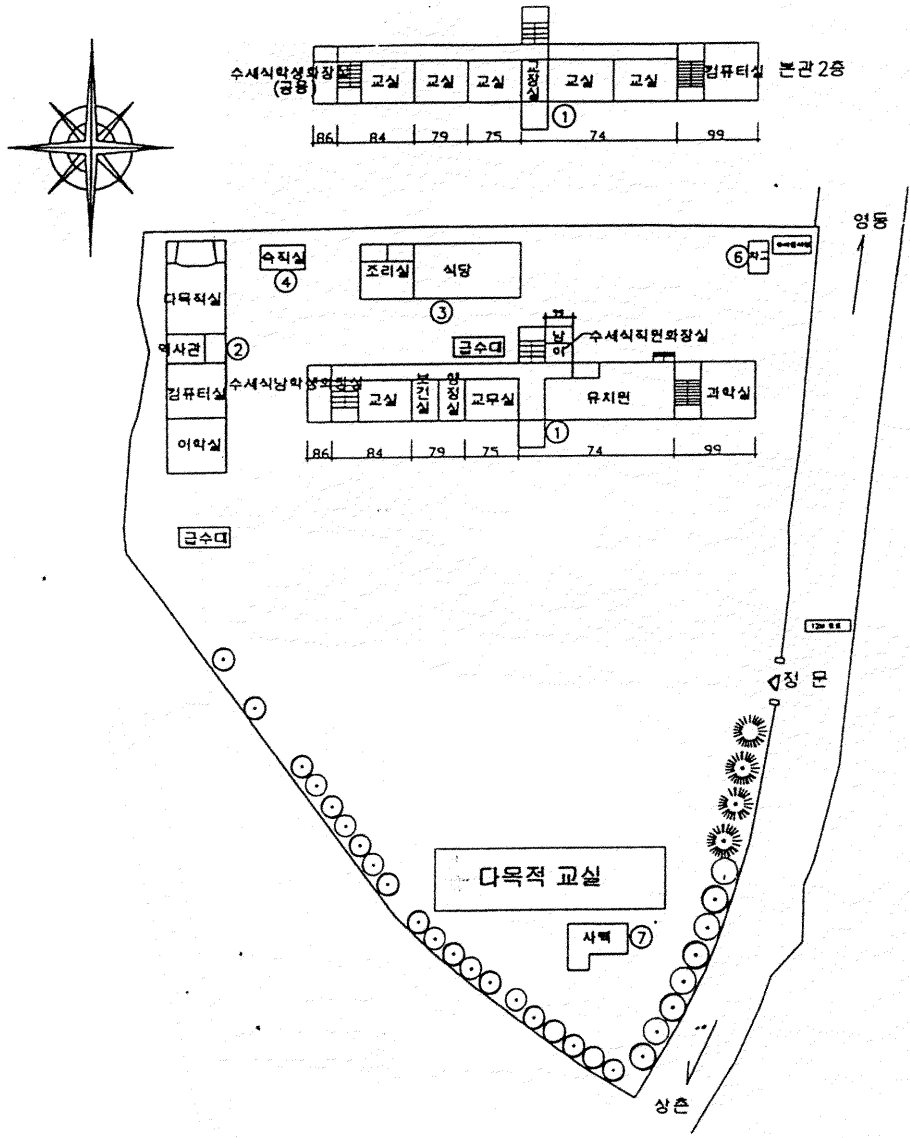
(3) 삼산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삼산리	120-2	철콘철골	978	890,000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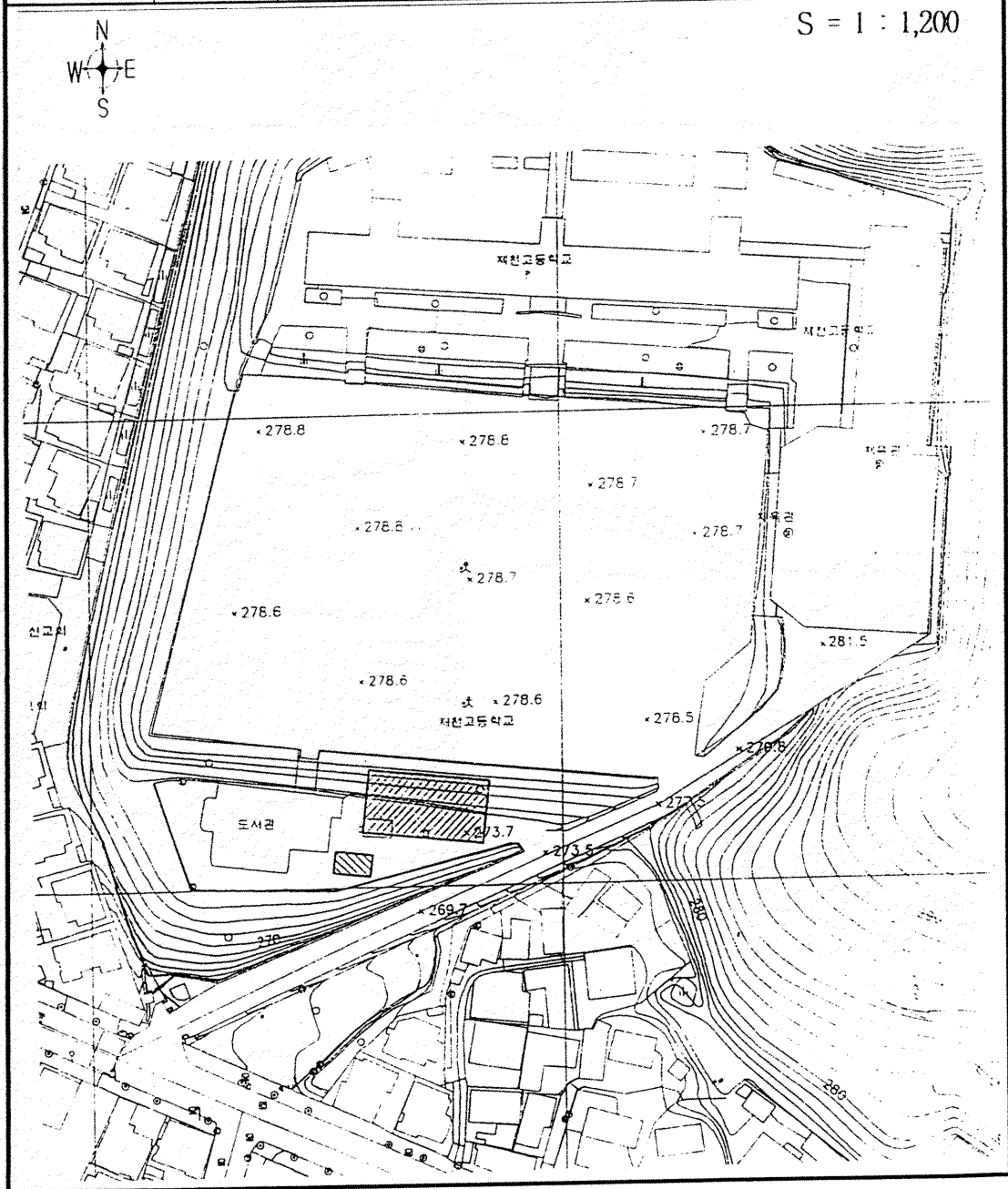
(4) 매곡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노천리	54	철콘판넬	864	770,000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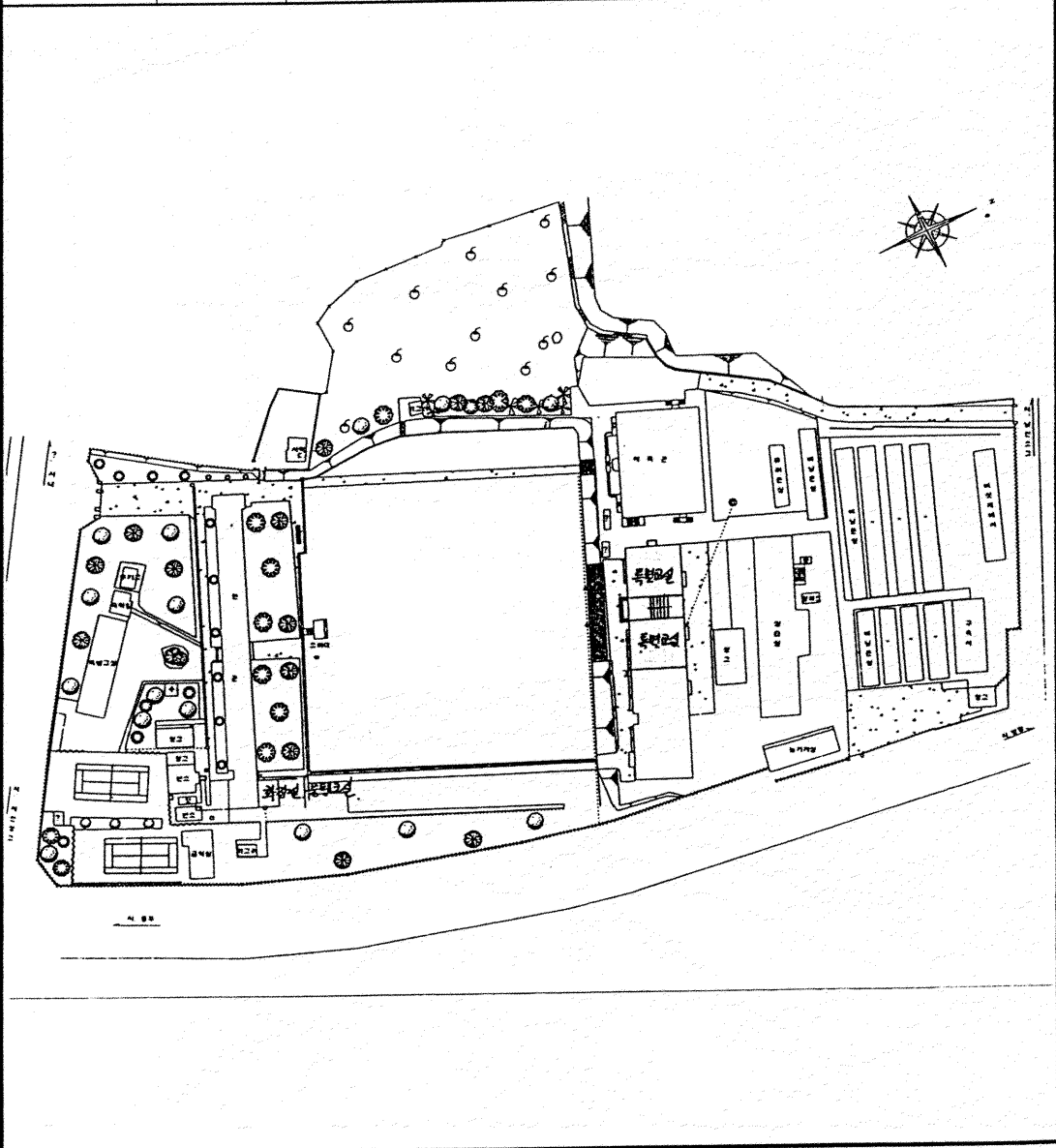
(5) 제천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수 량 (㎡)	추 정 가 액 (천 원)	사 유
생활관	청전동	144-10	철콘슬	999	1,000,000	기부채납



(6) 제천농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특별교실	동현동	15-3	철콘	630	484,050	교육환경개선
계단실			철콘	45	31,200	
화장실			철콘	180	269,400	
물탱크실			철콘	45	50,000	
계					900	



(별첨 4)

의안번호	제 156-3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9월 3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56-3
----------	-------

제출년월일 : 2003. 09. 1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716억 1,382만 7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379억 9,249만 5천원이 증액된 1조 1,096억 632만 2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97억 4,758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32억 2,908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억
9,581만 9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만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287억 3,414만 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3억 8,582만원,
급여·복지 10억 7,000만원, 교육행정 13억 1,376만 8천원, 기타경비 64억
8,87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음.

예산안 : 별 책

사항별 설명서 : 별 책

(별첨 5)

의안번호	제 156 - 4호
의 결 년 월 일	2003. 9. . (제 156 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 출 자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제출년월일	2003. 9. 2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

의안 번호	제156-4호
----------	---------

발의일자 : 2003. 9. 26.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3. 10. 17.(금) ~ 10. 21.(화) / 5일간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 (1) 10. 17.(금) 10:00 충주교육청
- (2) 10. 18.(토) 10:00 영동, 단양교육청(2개조)
- (3) 10. 20.(월) 10:00 청주교육청
- (4) 10. 21.(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6명

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 붙임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3. 9.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76
2. 감사기간	176
3. 감사대상 기관	176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보조직원 지정	176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77
6. 감사자료 요구	177
7. 감사요령	177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78
9. 행정사항	178

※ 붙임 내역

○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80
○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83
○ (별첨3) 증인선서문	184
○ (별첨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18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3. 10. 17.(금) ~ 10. 21.(화)(5일간)

3. 감사대상 기관 (5개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충청북도단양교육청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보조직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직 위	성 명
위원장	고규강
간 사	김남훈
위 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나. 사무보조 직원 : 의사국 직원 5명

- 의사국(과)장, 의사담당, 6급 1명, 7급 1명, 사무보조 1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차수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1	2003. 10. 17.(금)10:00	충주교육청	충주교육청
2	2003. 10. 18.(토)10:00	영동교육청 단양교육청	영동교육청 단양교육청
3	2003. 10. 20.(월)10:00	청주교육청	청주교육청
4	2003. 10. 21.(화)10:0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6. 감사자료 요구

가. 200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나. 감사 자료요구 내역 : (별첨4)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한다.

나. 감사진행 순서

진행순서	비고
<input type="checkbox"/> 감사실시 선언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인사	
<input type="checkbox"/> 증인선서	
<input type="checkbox"/>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	
<input type="checkbox"/> 질의 및 답변	- 질의 후 정회
<input type="checkbox"/> 감사결과 강평	- 생략가능
<input type="checkbox"/> 감사종료 선언	

8.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이상 공무원

나.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9. 행정사항

가. 4쪽(6항)의 요구에 대하여

-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피감사기관별로 13부를,
- 각 위원별 요구서에 의한 감사자료는 전 위원 통합분 4부, 위원별 발췌분 1부씩을,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은 13부씩을 작성하여 **10. 8.(수)**까지 제출

나.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대외비공개자료** 표시 제출

다.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 : (별첨1) '감사장 좌석배치도' 참조
- 명패준비 : 위원장, 위원, 기관장, 기자석 등
- 방송설비 : 마이크는 위원장석·감사위원석·기관장석·발언대에 각 1개씩 설치
- 녹음준비 : 녹음기 및 카세트 테이프 준비
- 출석대상 공무원 명단 : (별첨2)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감사위원 및 감사진행 보좌직원 좌석에 배부

라. 기타 지원요청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위원 이동용 15인승 버스 1대 지원(2003. 10. 17. ~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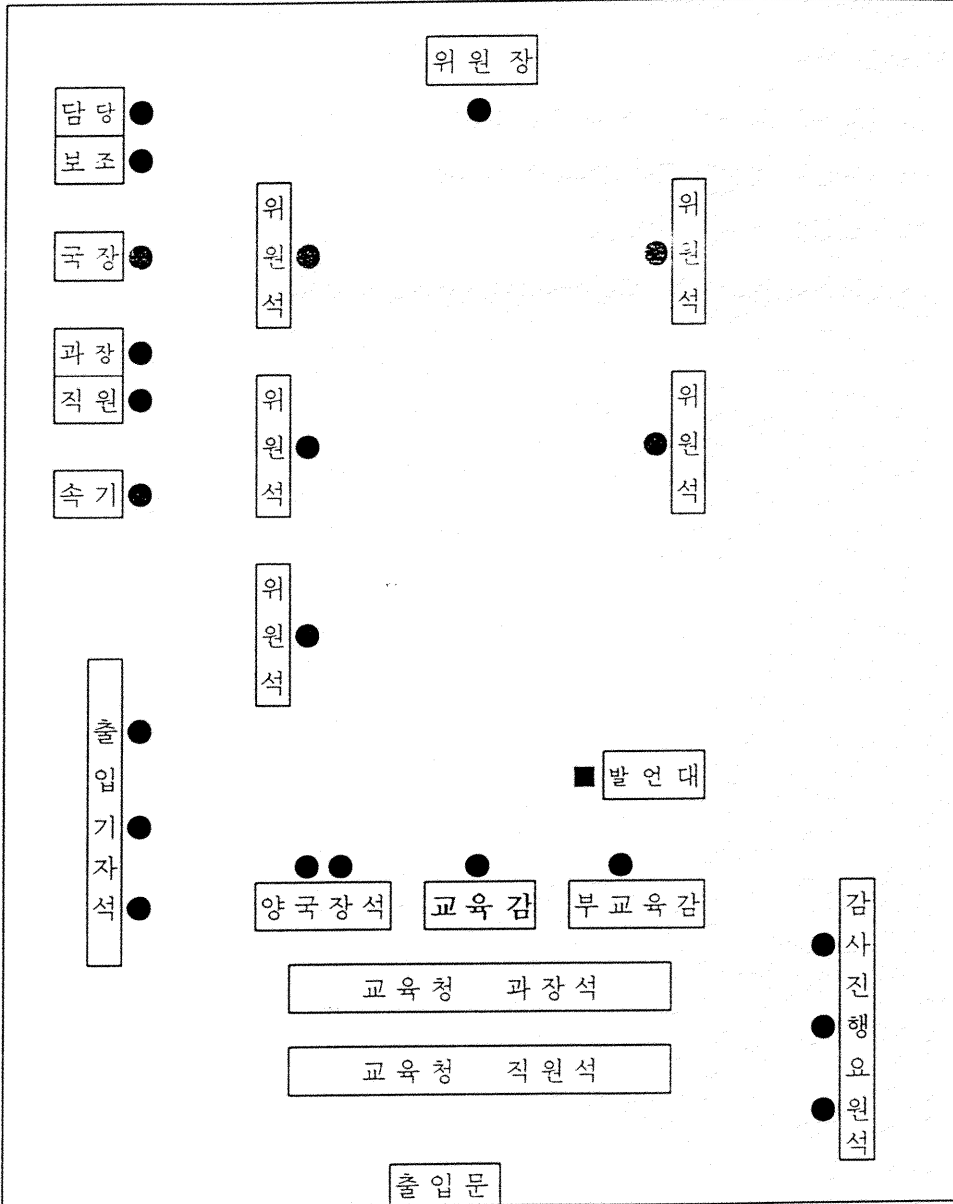
※ 붙임 내역

1.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2.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부.
3. (별첨3) 증인선서문 1부.
4. (별첨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1부.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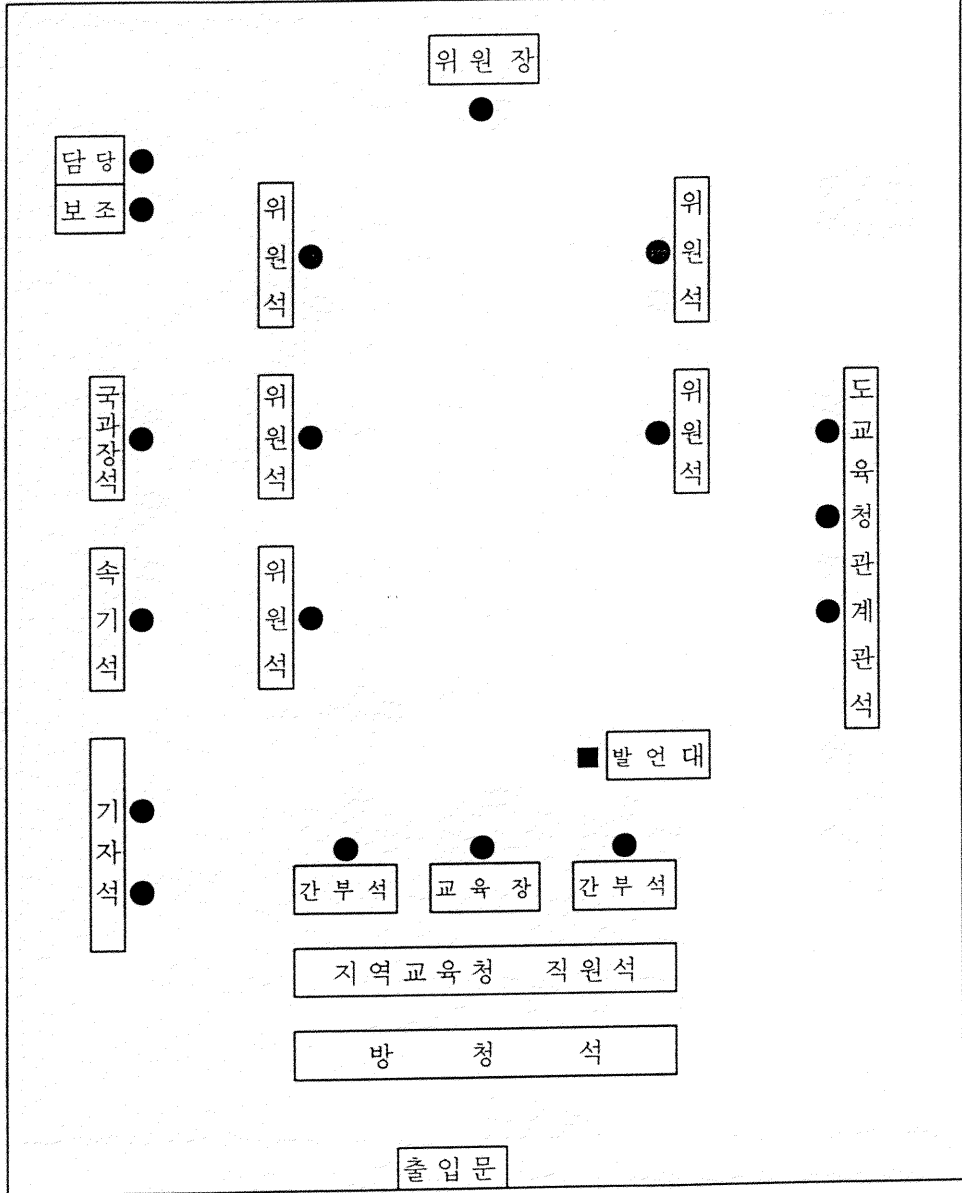


※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청주·충주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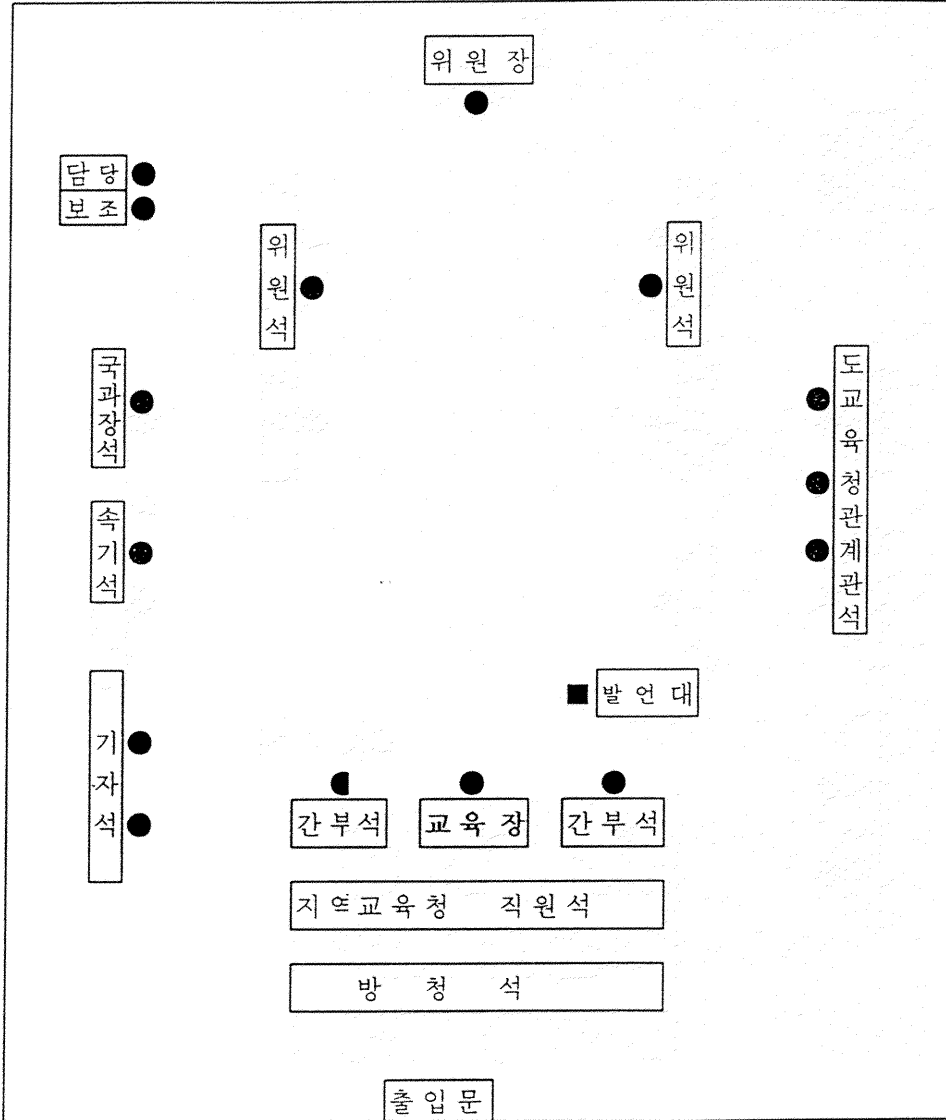


※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1-2)

감사장 좌석 배치도

<영동·단양교육청>



※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

○ 기관명 :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 성명 : 한자로 기재

(별첨3)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직 성명 (인)

(별첨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요구위원 : 고규강 위원

1. 초등학교 근무년한 근무지역 적용 현황(규정 제8조) : 도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 현재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제한지역	제한근무기간 적용 인원			비 고
	교 장	교 감	교 사	
청주시	명	명	명	
청원군				
청주,청원통산				

※ 전보예외자는 제외

※ 제한년한 : 청주시 교장·교감 6년, 교사 8년

청원군 교장 6년, 교감 8년, 교사 10년

청주청원통산 교장 8년, 교감 11년, 교사 13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위표에 의거 별도작성 하되 비교란에 주된 사유 기재

2. 중등교원 근무제한구역 및 년한적용 현황(규정 제11조) : 도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 현재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제한지역	제한근무기간 적용 인원			비 고
	교 장	교 감	교 사	
청주시	명	명	명	
청원군				
청주,청원통산				

※ 전보예외자는 제외

※ 제한년한 : 청주시 교장·교감 6년, 교사 8년

청원군 교장·교감 8년, 교사 10년

청주청원통산 교장·교감·교사 10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보된 인원이 있다면 위표에 의거 별도작성, 비교란에 주된 사유 기재

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 도교육청

(금액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직								
기능직								
계								

4. 각종 수수료 징수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별	구분	종류	금액/건	비고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 내신제 전형고교 ○ 과학고, 외국어고 ○ 예술고		
	검정수수료	○ 일반직공무원공개채용 ○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 특수학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 고입고졸 검정고시		
	제증명수수료	○ 신원에 관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무상 발급증명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대상별		

※대상기간 : 2001 ~ 2003. 8월말까지 연도별 작성

※각 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작성하고 총집계표를 연도별 작성

5. 중등교원 인사지구 및 근무제한년한 적용 현황 : 충주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까지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지구별	교 감	교 사	비 고
가	명	명	
나			
다			

※ 제한년한

- 가지구 교감 8년, 교사 10년
- 나지구 교감 8년, 교사 10년
- 다지구 교감 8년, 교사 4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보된 자는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고 비교란에 주된 사유 기재

6. 초등학교원 인사지구 및 근무제한년한 적용 현황 : 충주교육청

가. 2001~2003. 8월말까지의 제한년한에 따라 전보된 인원

지구별	교 감	교 사	비 고
가	명	명	
나			
다			

※ 제한년한

- 가지구 교감 6년, 교사 8년, 동일교 교감3년, 교사 4년
- 나지구 동일교 교감 4년, 교사 4년
- 다지구 동일교 교감 4년, 교사 4년

나. 제한지역에서 제한년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보된 자는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고 비교란에 주된 사유 기재

7.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현황 : 도교육청

(금액단위 : 천원)

국별	합계		2001		2002		2003. 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의 사 국								
교 육 국								
기획관리국								

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 충주·단양교육청

구 분	2001		2002		2003. 8월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초등교육공무원						
중등교육공무원						
계						

9.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문책현황 : 영동교육청

구 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계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행정지도							
기 타							

※대상기간 : 2001~2003. 8월말까지, 연도별 별지작성

10. 민원(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민원명	민원신청내용	처리내용	미결(사유기재)

※대상기간: 2001~2003. 8월말 현재

※민원내용을 위 서식에 요약 정리하고 요구문서와 처리된 공문서 사본 첨부

※주민 및 학생, 학교 등으로부터 요구된 진정·건의 민원

11. 각종 사건 사고 현황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사건명	사건내용	처리내용	미결사항

※작성대상 : 경고이상 신분상 조치 관련 사건·사고

※대상기간 : 2001~2003. 8월말

-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요약 정리하되 관련자료 첨부 제출
- ※사법당국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도 포함

12.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제기된 현황 : 도교육청

사건명	업무내용	판결결과	처리내용

- ※대상기간 : 2001~2003. 8월말 현재
- ※위 서식에 요약 정리하되 관련문서 첨부 제출
- ※계류중인 소송 자료도 첨부

□ 요구위원 : 김남훈 위원

1. 초등교사 수급방안 : 도교육청

- 가. 2003년 9월 1일 기준 부족교사수와 해소방안
- 나. 현재 본도 재직교사의 타· 시도 이탈 방지 방안
- 다. 교육청별 기간제 교사수(2003.9.1현재)

(단위 : 명)

교육청별	연령	연령별					비고
		30~39	40~49	50~59	60~62	62이상	

※1년이상, 1년미만 구분 별도작성

2. 인문계 고교 남·여 공학의 남녀비율(2003.9.1현재) : 도교육청

(단위:명)

학교명	학년별 학생수						남여비율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 도교육청

- 가. 2003년 9월 1일 현재 교육행정시스템(NEIS) 운영현황

교육청별	교육행정시스템(NEIS) 운영현황												비고	
	NEIS체제 운영학교수				NEIS, 수기 병행학교수				수기체제 운영학교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 나. 앞으로의 운영계획

4.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중 외부(타 시·군)업체 낙찰건수 : 도
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부터,~까지)	예산액	낙찰액	사업자 주소	비고

※대상기간 : 2002~2003.9.1현재

5. 학교별 체육지정종목(도) 현황(2003.9.1 현재) : 청주·충주·영동교육청

학교명	학생수	지정종목	비고

6. 영동군 관내학교 수해복구 현황(2002년도) : 영동교육청

학교명	피해일시	피해총액	복구총액	미복구총액	비고

※미 복구분은 그 사유와 대책을 상세히 기재

7. 초등학교 남·여 교원의 비율과 여성교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청주·충주교육청

가. 학교별 교원수

(2003. 9. 1.현재)

학교명	총 교원수			남여비율(%)		기간제 교사수	학교 주소
	남	여	계	남	여		
계							

나. 여성교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요구위원 : 성영용 위원

1. 감사 수감 관련자료(2002~2003년도) : 도교육청

가. 현황(교육위원회, 도의회, 국정감사 제외)

감사기관	감사구분	감사중점사항	감사기간	감사반 수	비고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기타기관					

나. 각 감사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요약분 제출 가능)

2. 2004. ~2008. 교육여건개선사업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교육여건 개선사업 총괄 자료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증축교실수, 신설학교수,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 포함)

나. 대상학교별, 연도별 학생수용계획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

다. 2004년도 대상학교 시설공사 부지의 타당성 검토여부 및 실적

3. 학교설립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충북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나. 공교육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4. 연구·시범학교 관련자료(2002~2003년도)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가. 운영계획서 및 연구·시범학교 지정현황(주제별, 지정주체별)

나. 학교지정 및 과제선정시 적용하는 기준

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시 제공되는 행·재정적 지원현황

(운영비, 인사상 우대되는 교원의 범위 및 가산되는 정도 등 포함)

라. 2001년도 및 2002년도 운영결과를 일반화자료로 재구성하여 일선학교에 활용한 실적

5. 치코대학 어학연수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연수계획서(2002, 2003년도)

나. 2002~2003년도 연수대상자 선발 현황

-교원 : 학교명, 직급, 성명, 연령, 성별, 전공교과목, 타 국외연수 실적 등

-학생 : 학교명, 성명, 학년, 외국어 의사소통 평가 결과 등

다. 연수대상 교원 및 학생 선발 관련 집행청 기준

라. 2001~2003년도 연수결과 분석자료

(교원 활용실적, 학생들의 문화 이해 및 영어능력 향상 정도 등 포함)

6. 경제생활교육 관련자료(2003년도) : 도교육청

가. 청소년 신용불량자 현황

나. 신용관리, 건전한 소비생활 등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교육 실적

7. 학생 상담교육 관련자료(2003.9.1현재)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 교육청

가. 도내 상담교사(전담) 배치현황

구분	학교수	배치 학교수		자격(연수)이수 여부			비고
		배치	미배치	이수	미이수	계	
초							
중							
고							
계							

나. 상담실 운영현황

상담영역별	상담건수			비고
	개별	집단	계	
(성적, 이성 등 적절히 구분)				

※초·중·고별 별도 작성

※대상기간 : 2002~2003.8월말 현재

다. 상담지도 효과가 탁월, 미흡하였던 사례(각 3건)

라. 외부 상담기관(단체) 활용 실적 - 서식은 위 “나”번과 같이 작성

8.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거주지 현황(2002,2003년도) : 도교육청

구분	시행년월일	응시자 거주지 현황								비고	
		청주	충주	...					단양		계
고입											
	소계										
고졸											
	소계										
합 계											

9. 학생보건관리 관련자료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 가. 2001~2003년도별 초·중·고별 학생 체격의 변화 추이
 - 키, 몸무게 등 신체(체격)검사 결과 분석 자료
- 나. 2001.~2003.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 결과 분석자료(요약)
- 다. 2001.~2003. 학생종합검진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자료(요약)
 -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10.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교사 현황(2002,2003년) : 도교육청

학교명	성명	퇴직 년월일	재임용 년월일	성별	연령		컴퓨터관련자격취득		재임용후 연수	
					퇴직시	재임용시	년월일	자격명	년월일	연수명

11.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자료 : 도교육청

- 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요건
- 나. 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03.9.1현재)

학교명	설립년월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소재지
				교원	사무직원	

다. 방송통신고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행정상, 재정상 인센티브 내용
 라. 학생 거주지 현황

(2003.9.1현재)

학교명	학생 거주지 현황										비고
	청주	충주	...						단양	계	
합계											

12. 신형컴퓨터 보급으로 교체된 컴퓨터 처리 실태 :도교육청, 청주·충주·영
 동·단양교육청

가. 2003. 신형컴퓨터 보급현황

구분	교체대상컴퓨터수	교체			비고
		2003	2004.이후	계	
초					교체기종 : 보급기종 :
중					
고					
계					

13. 다목적교실(강당, 체육관)현황 : 도교육청

학교명	주용도	면적(m ²) 및 가능한 경기	투자재원				비고
			도교육청	교육부	기타	계	
		1,000m ² (농구,배구,핸드볼,... 등)					

※작성대상 : 1995년 이후 신축한 건물

□ 요구위원 : 송대현 위원

1.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실적(2002,2003년도) :도교육청, 청주·충주·단양교육청

가. 학비지원 실적

(금액단위 : 천원)

년도별	전체 원아수	학비지원실적			생활보호대상자수	결식아동수	비고
		인원	비율(%)	금액			
2002							
2003							

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도교육청 편성 예산서 사본(2002. 2003년도)

2. 독립유치원 현황 및 설립 추진 계획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독립유치원 현황(2003.9.1현재)

(단위 : 명)

교육청별	유치원명	건축 년월일	연면적 (㎡)	배정학급		수용현황		비고
				학급수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나. 연차별 설립 계획 및 선정기준

다. 병설유치원 전환 계획

3.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최근 장학지도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4.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실업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2003.9.1현재) : 도교육청

가. 실업계고교 운영 체제

나. 학과개편 실적

다. 중장기 발전계획

라. 실업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 실적

5. 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자료(2002,2003년도) : 도교육청,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

가. 학교부적응으로 징계받은 학생 현황

년도별	유형별 학생수								비고
	가출	폭행	절도	이성	지도불응	학습태도불량	인터넷관련	기타	
2002									
2003									

나. 학교부적응(집단 따돌림)으로 전학한 학생 수

년도별	전학 학생수	비고
2002		
2003		

다. 중퇴후 복학생 현황

년도별	복학 학생수	비고
2002		
2003		

라.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대책 :

※작성대상

-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를, 청주·충주·영동·단양교육청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교육청에 비치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6. 급당 인원수 감축에 따른 초등교원 연차적 충원 계획(2003~2005년도) : 도교육청

- 가. 급당 학생수 감축 연차적 계획
- 나. 교원 충원 연차적 계획
- 다. 부족교원 충원 연차적 계획(신규, 복직, 기간제 등)
- 라. 교대졸업생 유인체제

7. 교과목 상치 교사 관련자료(2003.9.1현재) : 도교육청

- 가. 과목별 상치 교사 현황
- 나. 고등학교 선택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의 문제점과 대안
- 다. 부진공 연수 계획
- ※ 중·고별 구분 작성

8. 보건·전문상담·사서 교사 정원 현황(2003년도) : 도교육청

가. 정원 및 현원

(2003.9.1현재)

구분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정원			
현원			
부족인원			

- 나. 부족교사 충원에 대한 연차적 계획
- 다. 추진상의 문제점

9. 사설학원 운영 관련자료(2003.8월말 현재) : 청주·충주교육청

가. 사설학원(개인지도 포함) 현황

(단위: 개소, 명)

학원수 및정원	입시	외국어	사무	고시	음악	미술	서예	숙셈	웅변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	독서	종합	기타	개인 지도	계
학원수																	
정원																	

- 나. 학원 운영 지도 점검 실적
- 다. 위반사항의 유형과 적발건수
- 라. 학원 개방시간 제한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

10.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2003.9.1현재) : 도교육청

가. 화장실 개선 사항

(단위 : 동)

학교 급별	재래식화장실 사용학교 현황		남/여 교직원 공동사용화장실 보유학교 현황		비 고
	학교수	동수	학교수	동수	
초					
중					
고					
계					

나. 고등학교 3학년 정규교실 냉방시설 개선 사항

(단위 : 실)

시설명	고3 정규교실		비 고
	설치	미설치	
교실 냉방시설			

※도교육청에 비치된 통계자료 활용 작성

□ 요구위원 : 이기수 위원

1. 2003. 9월 현재 학생문화회관 추진상황 : 도교육청

2. 청주, 충주,제천 등 도시지역의 학생교통사고 현황 및 학교주변 학생통학로
와 과속방지턱이 없는 학교현황 : 도교육청

가. 학생교통사고 현황(2001.~2003.9.1현재)

(단위 : 명)

학교 급별	상해별	연도별			계
		2001	2002	2003.9.1현재	
초	사망				
	부상				
중	사망				
	부상				
고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 작성대상지역 :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

나. 학교주변에 학생통학로 및 과속방지턱이 없는 학교현황(2003.9.1현재)

(단위 : 교)

지역별(시)	학교 급별	총 학교수	학생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미확보교	
			학생통학로 미확보교	과속방지턱 미확보교
	초			
	중			
	고			
	계			

※ 작성대상지역 :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

3. 소규모학교 및 폐교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농촌지역 학생수 50명이하 학교현황(2003.9.1현재)

교육청별	학교 급별	50명이하 학교수	비 고
	초		
	중		
	고		
	계		

나. 폐교 실태(2003.9.1현재)

(단위 : 천원)

교육청별	폐교 관리현황									비고
	임대						관리중			
	용도별						임대수입	폐교수	관리비 지출금액	
	교육 용	수련 시설	복지 시설	연구 시설	기타	계				

4. 최근 3년간 전염병 발생 및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현황 : 도교육청

교육청별	구분	학교명	발 병 원 인	조치사항	비고
	전염병				
	식중독				

※대상기간 : 2001 ~ 2003. 9.1현재

5. 학교급식 관련자료 : 도교육청

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학교 급식식단 2개교씩 제출

(도시지역 : 청주, 충주지역 각 1교 / 농촌지역 : 영동, 단양지역 각 1교)

6. 사서교사 및 환경교과 담당교사 자격증 소지현황(2003.9.1현재) : 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사수		자격증 소지자수		비고
	사서교사	환경교과 담당교사	사서교사	환경교과 담당교사	

7. 조도 및 소음의 기준미달 학교수(2003.9.1현재) : 도교육청

(단위 : 교)

교육청별	학교 급별	학교수	기준미달 학교수			비율(%)			비고
			조도	소음	계	조도	소음	계	
	초								
	중								
	고								
	계								

※잉여교실의 기준 미달은 제외하고, 일부미달인 학교는 기준미달에 포함.

8. 음란사이트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도교육청

9. 급당학생수 35명이하 조정에 따른 소요교실 증축시 신축부지가 없는 학교수
: 도교육청

□ 요구위원 : 진옥경 위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파악자료 우선하고, 부족분만 학교별로 제출받아 학교부담 최소화하여 작성)

1. 도내 초·중·고 식중독 발생 현황(1999~2003.9월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명, 피해정도, 원인, 조치내용, 업체명
2. 2003. 교육부 실시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에 관련하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가. 현행 위탁급식 학교
 - 나. 학부모 여론수렴방식 및 결과(설문조사시 설문지 첨부)
 -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제공자료 및 회의록
 - 라. 직영전환 유보를 표한 도내학교 위탁급식시설 투자현황
(기투자 시설, 설비 등의 상세내역, 액수, 상환 완료 시점 및 근거)
3.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언론홍보를 위해 지출한 액수(2001~2003.9.1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 항목 공히 영수증 첨부, 개인 성명 불요)
 - 가. 도교육청 기자실 현황
 - 1) 넓이(m²)
 - 2) 집기류 내용(전산기기 등은 기종 및 구입년도, 가격)
 - 3) 연간 운영비(물품비 상세내역, 냉·난방비(전기료 포함))
 - 나. 도교육청 공식언론 홍보비(“충북교육소식” 발행 불포함)
 - 다. 교육감 관공비 중 차지하는 언론 홍보비(기자 접대비, 선물비용 포함)
 - 라. 도교육청 실·국장 업무추진비 중 지출한 언론 홍보비(기자 접대비, 선물비용 포함)
 - 마. 시·군 교육청 언론홍보비 및 일선학교 언론 홍보비
 - 바. 기타 언론사 행사 협조 및 후원 내용
4.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시정 처리요구 내용 및 이행 현황(2000~2003년도)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5. 시·군별(일반회계)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실적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가. 2003년도 실적
 - 나. 2004년도 신청내용 및 액수

6. 2001년 이후 도내 실업계고에서 운영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내용 : 도교육청

7.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연간 이용 인원 및 내용(2002,2003년도) : 도교육청

8.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앞 세금천 수질 개선 운동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도교육청, 진천교육청

9. 도내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2003.9.1현재) : 도교육청
(학교명, 위치, 종류, 실태, 문제점, 지원계획)

10. 2000~2003년도별 교단선진화 추진 내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구입기종, 액수, 교체연도, 조달청 물품 계약업체 및 납품업체명
 - ※초, 중, 고별 구분 작성
 - (작성대상 : 교단선진화 예산으로 집행한 물품)

11. 실습용 컴퓨터(교단선진화 미포함분) 보급 내역(2002,2003년도)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구입기종, 액수, 교체연도, 조달청 물품 계약업체 및 납품업체명
 - ※초, 중, 고별 구분 작성

12. 도내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련(2003)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가. 학교별 중식지원 학생수
 - 나. 선정기준

13. 도내 저소득층자녀 중·고학생 학비지원 관련(2003)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가. 학교별 학비지원 학생수
 - 나. 선정기준

14. 2002년도 하반기 이후 도내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실시학교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15. 학교별 앨범 현황(2002, 2003년도)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교번, 교명, 가격(계, 앨범 또는 CD), 구입자수, 업체명, 사양(쪽수, 내지재질, 표지재질, 편집(가), 규격, 제본, 표지면(나), 표지 개인사진 여부(다))
 - ※ 2003년도 계약분 포함
 - 가. 편집 : 매킨토시, 사진제관
 - 나. 표지면 : 금박, 은박
 - 다. 표지 개인사진 여부(학생 개인사진을 표지에 개인별로 넣었는지 여부)
16. 중·고등학교 매점운영 실태(2003.9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교번, 교명, 운영방식(직영·위탁), 계약방식(공개입찰·수의계약), 1년임대료, 임대면적, 현 임차인 최초 임대개시일, 임대수입 지출내역(사용처-지출액 명시)
17. 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2003.9.1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위원회명, 성명, 직업, 재임기간
18. 도내 사립학교 시·군별 교육청 지원금, 시·군별 재단 전입금 현황(2003) : 도교육청
19. 도교육청 산하 각급 도서관 구입도서 목록(2002,2003년도)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학교도서관은 제외
20. 도내 실업고등학교별 : 도교육청
- 가. 2002년도 구입 실험실습기자재 상세기종 및 가격(대체비, 수리비 상세내역 포함, 조달업체명)
 - 나. 2002년도 구입 첨단과학개편기자재의 상세기종 및 가격(대체비, 수리비 상세내역 포함, 조달업체명)
21.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도교육청
22. 원흥이 방죽 뒤 고등학교 부지 인근 매립 추정 무연고 사체수 및 향후 처리계획 : 도교육청

□ 위원 요구자료중 동일 사항

[성영용, 이기수 위원]

1. 성인병 질환 학생현황

년도별	학교 급별	학생수	성인병 질환 학생수					
			비만	당뇨	...			계
2001	초							
	중							
	고							
	소계							
2002	초							
	중							
	고							
	소계							
2003	초							
	중							
	고							
	소계							

[성영용, 송대현 위원]

2. 교체된 컴퓨터 처리현황

(단위 : 대)

년도별	폐기	매각	재활용 실적					...	합계
			자체	증여	...		소계		
2001									
2002									
2003									

※초,중,고별 구분 작성

※도교육청에 비치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별첨 6)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3. 9.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9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3년 9월 22일)

○ 제2차 소위원회(2003년 9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 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71,613,827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37,992,495천 원이 증액된 1,109,606,322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9,747,58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229,088 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95,819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0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28,734,14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385,820천원, 급여·복지 1,070,000천원, 교육행정 1,313,768천원, 기타경비로 6,488,765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71,613,827천원보다 37,992,495천원이 증가한 1,109,606,32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109,606,322	1,071,613,827	37,992,495	3.5% 증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9,747,58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229,08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995,819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2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480,201	67.1
	국고지원금	4,267,387	11.2
	소 계	29,747,588	78.3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798,596	2.1
	비법정전입금	2,430,492	6.4
	소 계	3,229,088	8.5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4,405,988	11.6
	잡수입	589,276	1.5
	이월금	555	0.0
	소 계	4,995,819	13.1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기타지원금	20,000	0.1
합 계		37,992,495	100.0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28,734,14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385,820천원, 급여·복지 1,070,000천원, 교육행정 1,313,768천원, 기타경비로 6,488,76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1,491,970	3.9
	초등학교	11,344,822	29.9
	중 학교	8,732,791	23.0
	고등학교	6,504,080	17.1
	특수학교	651,479	1.7
	기타학교	9,000	0.0
	소 계	28,734,142	75.6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385,820	1.0
급여·복지	급 여	1,600,000	4.2
	복지·후생	△530,000	△1.4
	소 계	1,070,000	2.8
교육행정	교육청	902,202	2.4
	지역교육청	168,686	0.5
	교육지원기관	242,880	0.6
	소 계	1,313,768	3.5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9,150,000	24.1
	제지출금	7,860	0.0
	예 비 비	△2,669,095	△7.0
	소 계	6,488,765	17.1
합 계		37,992,495	100.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시설사업 24,354,014천원
 - 교실개축 3,866,000천원
 - 교육환경 개선 7,390,512천원
 - 다목적교실 5,556,800천원
 - 유치원 단독원사 1,342,651천원
 - 급식시설현대화 2,137,440천원

· 교사보수및특별교실	1,249,000천원
· 전국체육대회시설	450,000천원
· 교직원공동숙소	160,136천원
· 부지매입비	2,201,475천원
○ 과학교육 활성화	1,130,000천원
· 현대화실험실	880,000천원
· 발명공작실 설치	250,000천원
○ 실업교육 내실화	4,654,514천원
· 실습기자재 확충	1,525,223천원
· 첨단학과 개편	555,901천원
· 특성화고 기자재	945,154천원
· 공동실습소 기자재	720,341천원
· 실고생 장학금	670,585천원
· 실고 차량교체	80,000천원
· 산업체연수위탁	97,310천원
· 여학생친화적인교사연수	60,000천원
○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2,507,388천원
· 실습컴퓨터 보급	912,800천원
· 전산보조원 임용	836,000천원
· 신 전자문서시스템	758,588천원
○ 교육활동 지원	1,877,630천원
· 영재교육	76,334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34,000천원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42,880천원
· 제7차교육과정 연수·홍보	63,500천원
· 유아·특수교육 진흥	55,800천원
· 저소득층자녀 지원	692,258천원
· 학교급식 지원	278,550천원
· 도서확충 및 특별활동 지원	410,000천원
· 교원연수	11,308천원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3,000천원
○ 평생교육 지원	429,508천원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4,820천원
· 디지털자료실 장비	21,688천원
· 가족동요제 지원	3,000천원
○ 인건비(보급조정수당)	1,600,000천원
○ 지방채상환(원금)	10,000,000천원

나. 종합의견

금번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교실개축, 다목적교실 확보, 유아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교육활동 지원 등에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법적·사실적 요건을 구비하여 합목적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병설유치원 급식지원기탁금 1억 3,727만 1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겠음.

앞으로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세입이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층자녀 중식 및 학비 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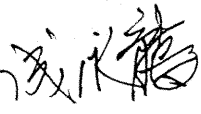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조회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학교 규모별 예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회에 한하여 집행시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집행하고 향후 시설비 기준 단가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할 것을 촉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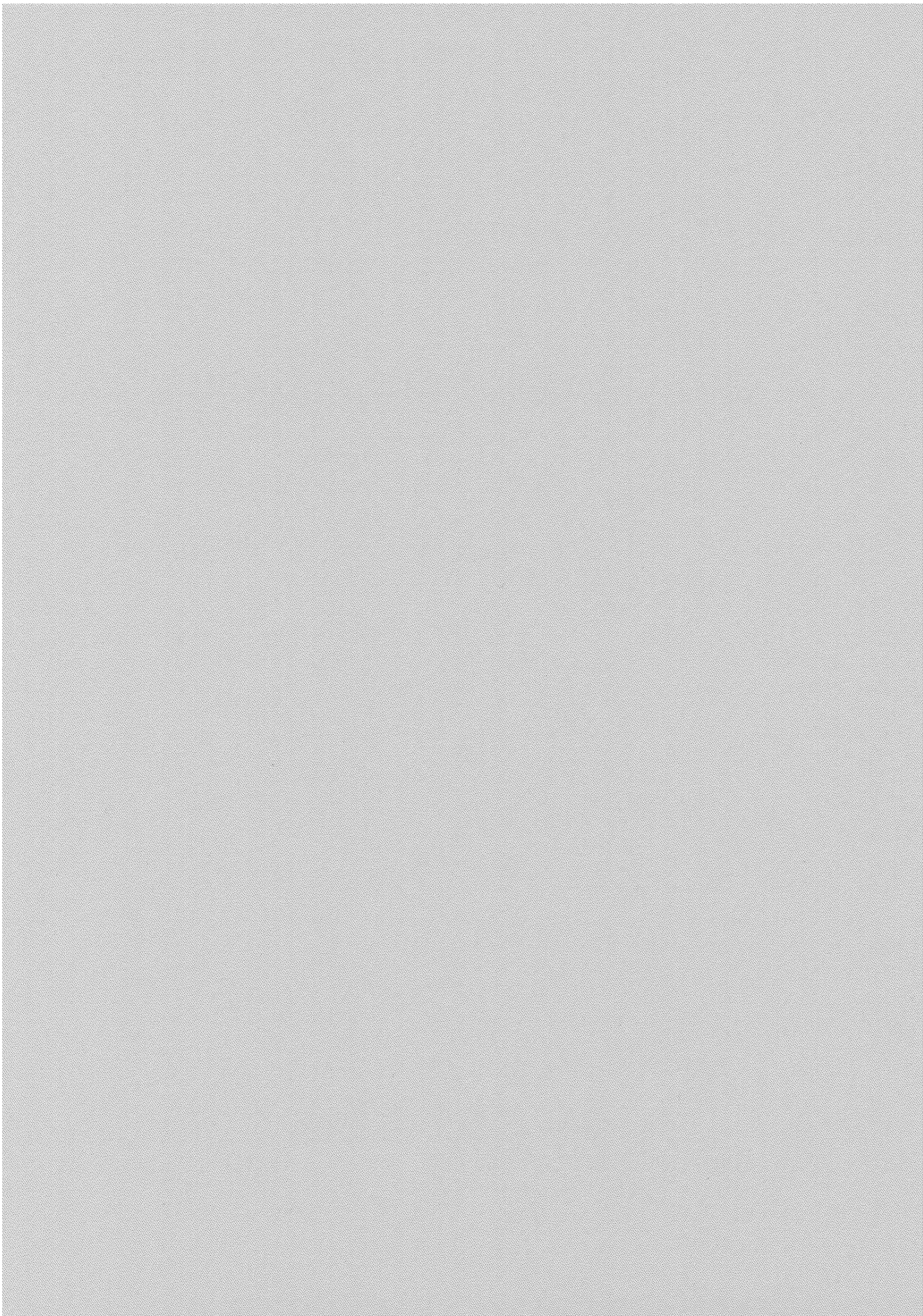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진옥경	

第15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19

II.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223

III. 부 록

-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271
- 2. 서면답변서27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2일 (월요일) 11시 48분

議事日程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48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이기수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

대)

● 위원장 성영용

너무 중책을 맡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 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50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이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송대헌 위원

찬성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되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52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9월 24일, 2
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을 심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
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4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진옥경.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성영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
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서 고규강 위원님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25쪽하고 주요사업설
명자료 119쪽 충주 금릉초등학교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부지매입비로 20여
억원을 계상하여 변경전 부지매입비와 우
선은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원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현 부지에 대한 구
체적인 처리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집행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주의 금릉초등
학교는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부지의 어
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다시 위치를 변경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계획된 부지를 위해
토지 매입비를 2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
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매
입된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원칙을 따지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거를 변경된 부
지매입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재 기매입된 부지 위치가 사실은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매입된 부지
는 매각을 할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건
지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
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변경된 부지매입에
소용되는 경비 20억은 사실은 자체 재원
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매입 부지의 결정은 좀 저희가 신중
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
고 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지금 기매입된 부지의 타당성이 전망이
좋아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시설을 하려고 놔두는건가?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

다.

예를 들어서 아직은 요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주 지금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실은 언제가는 다른데로 옮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교육청하고 거기에 도서관이 같이 있는데 그 시설을 옮겨야 될 형편에 있고, 또 한가지는 충주에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게 되는데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건축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추진이 어렵고, 그를 위해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48쪽 주요사업설명서 121쪽 삼산초등학교 단독원사 시설비로 4억 2,924만 3,000원을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동액을 감액해서 예산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상 증축불가라는 사유를 달고 있는데 증축계획서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이걸 세웠던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당초에 저희들이 삼산초등학교 단독원사를 짓기 위한 위치가 현재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에 증축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원을 떼어 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은군하고 협의한 결과 2005년도에 도시계획을 학교에서부터 조금 학교 쪽에서부터 떨어진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구두로 협의를 받고 부득이 사업 자체를 2005년도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예산성립 전에 그 도시계획원을 떼어서 그거를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주로 학교설계 과정에서 도시계획원을 Ep기 때문에 이런 다소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주요사업설명서 51쪽인데 학생흡연예방 교육사업비로 국고에서 6,000만원, 지방비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국고사업에 지방비를 함께 투입할 경우에는 사업집행 후 잔액이 다소 발생했다 그래도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요번 추경예산안에 거의 8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반환하고자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주요사업설명서 51쪽, 사항별설명서 53쪽.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내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관해서 2002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중에 국고가 6,000만원, 자체가 6,000만원해서 사업을 해서 1억 42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72만원이 발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잔액 사업을 한 다음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782만원을 반납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국고로 받은 782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정산하기 이전에 더 흡연예방교육에 관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야 될텐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서 할 적에는 충분히 다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1억 2,000만원이 모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비를 투입할 경우 대개 반환을 안하는데 지방비 6,000만원 투입을 하고 국고에서 6,000만원 왔는데 국고는 반환하고,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 건데 국고만 반환하는 경우가 대개는 없는 건데 이게.

●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잔액 발생한 것이 1,572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국고에 해당되는 786만원만 반납하고 저희 지방비에서 들어간 780만원은 저희 지방비로 다시 금년으로 넘어와서 저희 지방비에 포함을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준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고규강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생각을 하고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사항설명서 90쪽 지방채 상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통폐합, 학교시설 등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개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 기채한 금액이 약 1,12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 오고 있어 우리교육청 자체 부담은 없었던 것은 꼭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상환한 이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를 교육부에서 감안하여 주었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이 낮은 현재의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기채상환에 대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조기상환 함으로써 혹시나 어느 시점에서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우리교육 재정운영상 이자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8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100억원을 기채상환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상환하고 남은 기채 잔액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인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편성되는 100억원까지를 상환할 경우 연도별 기채상환계획보다 얼마를 조기상환하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예산편성과 같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원금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계속하여 지원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채 잔액은 총 1,120억 8,000만원의 원금 중에서 상환액이 669억 7,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100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569억 7,700만원을 상환을 했고 원금 잔액은 451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100억을 요번에 편성된 것을 갚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451억 갚지 않으면 55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지금 시중은행금리 1년 정기예금 계산으로 3.85%가 평균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재특상환이자율은 3.58%입니다.

그거는 재무부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채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채상환조기 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3년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총 29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569억 7,7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추가한 것은 569억 7,700만원에서 298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조기상환 분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채상환을 조기에 하는 이유와 원금이자에 대해서 국고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관리국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또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갔을 때에, 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채를 상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들도 결산감사 시에도 기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2002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한 900억원이 넘다 보니까 가급적 위원님들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에 따르고 또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100억을 기채상환자금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는 지금 계획대로 한분

도 뒤지지 않고 전액 국고로써 받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100억원을 갚게 되면은 남은 총 잔액이 451억 정도 남는다고 했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은 매년 한 100억원씩 갚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요번에 100억 상환하는 것은 국고에서 기채상환금으로 96억 1,278만 3,000원이 교부가 되어서 그 교부금에다가 자체 재원 3억 8,000을 플러스해서 100이 돼서 상환하는 것이고, 앞으로 매년 100억 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현황 여기에서 관계되는 건대 조희대개축과 지봉시설은 신설학교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규모나 학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1차 추경에서 조회대개축과 조회대 지붕시설 학교가 1차 추경에 청주 올랑초 지붕공사, 충주에 주덕초, 오석초, 가금초 그 다음에 옥천 청산, 영동에 황간, 단양의 대상초가 조회대 개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나 적은 학교 오석초 같은데는 학생수가 74명, 가금초는 학생수가 60명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조회대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이 청남초등학교 32학급에 1,198명 그 다음에 진천 성암초등학교 7학급에 95명, 단양 대가초등학교 5학급에 48명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2,210만원씩 조회대개축 자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조회대 규모가 일률적으로 예산이 2,210만원씩 나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학생들은 퇴약별에서 활동하고 있고 학생수가 6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뭐가 뭐보다 큰 격인 조회대와 또 거기에 꼭 지붕을 씌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조회대개축에 2,210만원씩 책정된 산출근거와 조회대 규모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03년도에 투입된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주 오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조그맣고 운동장도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런데에 2,210만원이라는 조회대를 과연 거기다가 건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것이 필요 하겠습니까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10만원 조회대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성영용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조회대 관련사항은 자료정리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상입니까?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있다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개요를 보면 중점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과학 교육 활성화,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교육활동지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재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등 기정예산 1조 716억 1,400만원에서 3.5%인 379억 9,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서 재원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공정한 배분은 재원마련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원면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도 특별교부금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잘 모릅니다.

● 송대헌 위원

잘 모르면 차후로는 알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는 전혀 교육인적 지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국가예산인데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는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총액인데 사실상 그것이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을 교육예산으로 받아서 그 1000분의 13중에서 11분의 10은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그냥 총액으로 주고, 11분의 1를 가지고 교육인적자부검 부총리께서 각 시·도의 현안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풍수해가 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별사업들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사립학교개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총 저희들한테 오는 규모가 연간 한 180억 내지 16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162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총액이 내국세가 어느 정도 건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금액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총액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현황은 알 수 있죠. 2002년도에도 지금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뒤에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도의 특별교부금은 주로 주요사업계획페이지 6쪽, 7쪽을 보니까 지방교육채상환이라든가, 교실개축, 다목적교실, 교사보수, 특별교실 현안사업 수리에 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라든가, 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실고기자 재확충, 급식시설, 단설유치원 설립 등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그 중에서 다목적교실하고 단설유치원 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특별교부금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인적지원부가 시·도에 배분한 지난해에 한 160억 우리 충북에 왔다고 하는데 그 배부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일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교육인적지원부에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배정을 할 때에는 전전년도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배부를 하는데 그 예산규모에 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시다. 마는, 그것이 장관님이 볼 때에 어떤 특정지역에 큰 대단위 사업이 있다든가 또 풍수해가 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너무 적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되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또한 아울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하는 경우에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 등은 체육회를 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직접 오는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6개 시·도의 어느 정도의 바란스는 맞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 송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 금년에 온 교부금 요번 추경에 교부금의 주요편성 내역을 아까 다른 것 빼고요, 다목적교실하고 단독유치원의 자료하나만 빼봐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목적교실 신축비 한 50억 5,800여만원, 유치원 단독신축비 73억 8,000만원 그 외에도 자료에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목적교실 배부대상학교를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걸 빼보니까 우리 창신초가 11억 1,000만원, 대제중학교가 9억 8,000만원, 매곡초등학교가 7억 7,000만원, 영동에 있는 영신중학교가 8억 6,000만원 또 다목적교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유치원 단독원사 신축비를 보니까 남산초등학교가 3억 7,100만원, 옥산초가 6억 3,600만원, 삼산초가 8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어제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위치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확인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원사에 단양초도 있네

요. 단양초도 3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운호중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 그것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첫째, 다목적교실과 유치원 단독원사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선정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단설유치원 경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을 독립시켜서 단설로 할 수 있는 학급수가 가능한 유치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독립유치원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같은 경우에는 단양초등학교 유치원과 상진초등학교 유치원이 통합을 해서 단양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충주의 남산초등학교는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을 갖다가 시설을 보완하고 학급을 늘려서 단설유치원으로 독립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은 다목적실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도내에 전체 지금 확보율이 30%입니다. 총 학교 448개 물론 병설학교 빼고 448개 학교 중에서 135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30%인데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율이 높은 곳이 옥천으로 한 45% 정도가 다목적실이 있고 제일 낮은 곳이 청원입니다.

요것이 저희들이 학교수가 적은 군은 학교수가 적다보니까 다목적실 몇 개만 지어도 %가 올라가고, 비근한 예로 학교수가 많은데는 또 다목적실을 몇 개를 더 지어줘도 %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수를 고려하고 지역과 초·중·고등학교 또 공립·사립을 검토를 하되 그 인근에 있는 다목적실 관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봐서 이것을 정합니다마는,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정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요거를 매년 선정할 때마다 실무자들과 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해서 선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립과 사립 그 다음에 지역별, 학생수별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분명한 답을 하나 듣고 싶어요.

우리 본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다목적교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를 몰라서 아까 모두에 충청북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되는 총액이 얼마정도 되느냐도 물어보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도 물어본 배경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제가 여쭙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군에 따라서 국회의원 출신구에 많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시·군들이 다목적교실의 분포상황이 차별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나은 시·군하고 없는 시·군하고 차별이 나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는 특별다목적교실의 예산이 연간 총액 충북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의 총액에 포함이 되는가 영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걸 제외 놓고 그분들이 노력해서 따온 부분을 제외 놓고, 매년 학교수나 학생수에 의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 특별교부금은 변동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충북에 와야할 총교부금 특별교부금속에 그 부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되는가, 사실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맙고 아주 많이 따주셔 하는 노력할 필요없고 그렇다면 포함된다면 우리 교육감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따져서 필요한 곳에 시·군간 국회의원 의원이 있든 없든 간에 안배를 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문한 탓인지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노력해서 따오면 우리충북 예산이 더욱 증대돼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 해서 여기 많은 본청의 직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렇다목적교실의 배정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탄없는 얘기를 우리 충북교육의 앞으로 예산편성에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관심있는 인사들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분이 가서 부탁을 했던 안했던 그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분명히 누가 부탁을 했던 안했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를 받아서 그 중에서 11분의 1을 특별교부금으로 쓰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준다면은 교육부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탁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일단 교육감님이 신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예.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애착을 가진 분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든지 기관인사 분들이 참 교육인적지원부에 당부해서 이렇

게 필요하니 예산을 더 다목적교실을 위해서 또 독립유치원사를 위해서 무슨 신설학교개축을 위해서 예산을 더 주시오, 특별교부금을 주시오 해서 그 분들이 영입 결국은 교육감님이 요청을 합시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돌아온 특별교부금이 궁극적으로는 충북에 배정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잘못 꼭해되어서 그 외로 가외로 추가해서 따다주는 것처럼 생색용으로 되어서 안되겠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단독유치원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요구를 이미 해냈기 때문에 지금 안용균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학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물론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자료를 또 요구하고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목적교실이나 단독유치원뿐

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좀 객관성 있는 기준과 타당성 검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우리교육청이 교육인적지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총액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4월 천안인가요, 천안에서 선수합숙소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하고 재산을 잃었으며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년 4월 25일에서 의결된 학교합숙소, 기숙사 및 급식소 운영관련 교육기관을 교육위원 전원이 방문 문제점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미원공고, 보은자영고, 옥천고, 영동중, 청주중, 금천고, 충주고, 예성여고, 제천동중, 단양고, 음성고 등 12개교를 방문하고 종합의견을 공문으로 교육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으로 예성여고 노후합숙

시설과 옥천고 기숙사시설을 조립식판넬 등 임시시설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공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 보내드리는 공문의 결재선상은 어디까지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장님까지 반드시 선람을 하고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감까지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공문과 관련해서 종합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시설부분 쪽 이런데 반영된 내용은 지금 파악이 바로 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좀 공문을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요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는 지역운영위원회 임원들하고 협의하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결재는 교육감님께 다 결재를 받고 나서 저희

예산부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가능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송대현 위원

아. 정리를 하고 계시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를 들어서 보은의 삼산초등학교 강당 같은 경비에는 다행히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 송대현 위원

어디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보은의 삼산초등학교입니다.

요번에 반영을 했고, 옥천고등학교의 어떤 기숙사 같은 것은 사실은 금액도 많을 뿐 아니라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마는 대부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요번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걸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송대현 위원님 질의사항이 또 있으십니까?

● 송대현 위원

요거 계속하면 매듭지으니까.....

● 위원장 성영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송대현 위원

예, 저까지 매듭짓고서 정회를 하시더라도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해봅시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중에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로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고 또 지역의 간담회에 대해서 결과를 보내드릴 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사국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었던 것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어야만 또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는 해당기관에 또 연락을 해 줄 수 있거든요, 뭐 가타부타 뭐 어떤 것은 검토한다,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을 해야 행정이 종결이 되는데, 벌써 4월 달에 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와 같은 관련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사용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용균 과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왜 먼저 계약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어제 현장검증을 청주를 가봤을 적에 운호도 그렇고 삼산초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보고페이지 중에 계약이죠. 설계비가 다 계약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약완료로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가 한달 전에도 있었고 추궁을 해보니까 위원들이 장소나 위치나 규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때는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와서 이렇게 성립 전이었습니다라는 페이지 한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꼭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어서 우리 사무행정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살펴봐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재원의 확보도 중

요하지만 배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합리적인 기준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정말로 모두의 국민이 낸 세금이 모든 학교의 학생수요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배분이 바로 여기계시는 집행청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에서 오늘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겹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송대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질의와 응답은 20분 내로 가능한 한 끝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15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균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 수고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추경에서 초·중등·고등학교에 대개 증액해 갖고서 학교비를 지원한 것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보면 한 5억 정도가 복지후생비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해서 그런건지 선생님들이든지 또는 교직원들, 일반직이나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복지후생에 관한 부분 일텐데, 그 사기진작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원래 많이 편성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5억 유독 복지후생 쪽만 총괄표에 본다면 세출에 5억 정도 감액이 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기획관리과장 안응균입니다.

복지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학자금 대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학자금 대부인원이 줄어 가지고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 간사 이기수

됐습니다.

두 번째, 송대헌 위원님께서 직전에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자료도 이렇게 요구해서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립이전 사용보고라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우리가 현장에 어제 다녀와 갖고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승인도 안됐지만은 설계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편은 또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재정법 36조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법규에 위반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7차 교육과정 연수라든지 이렇게 목적지정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9월 24일인데 시행일자가 9월 16일날 집행이 됐거든요. 그것도 6,300만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이 됐다면 물론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법규에 위반이 안됐다고는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결예상을 했다면, 모든 교육재정은 다 우리 국민들 세로부터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위원회나 이런데 승인을 거치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한 8일 전에 벌써 사전집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성립전 예산이 저희들이 예측을 당초에 했었던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어떤 보조금사업으로 오는 경우에 날짜가 지정되어서 사업날짜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대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공사기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선 설계비 같은 것만을 우선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성립전 예산 중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교원들하고 관련되어서 교원들이 방학중에 연수를 받는다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9월 16일자 사용한 7차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 같은 건 8일 전 아닙니까? 지금 서부터 그렇죠. 집행이 8일 전인 얘기인

데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위원회 올라와서 아마 6,300인가 얼마 예산이 세웠었는데 그 예산 아주 고정되어 있어 갖고서 교육위원들로서는 가감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중앙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권은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가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감액이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거고 증액이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가감에는 위원님들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8일 전에 사용한 내역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쇄물이 나오려면 1주일 전에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한 20여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재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인쇄에 들어갔거나 이렇게 되어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기중이거나 아니면 의안을 배부중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그것을 다시 편성해 넣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7차 교육과정사업 같은 것은 8일 전에 집행을 했지만은 예산이 편성이 거의 끝난 후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 감사 이기수

그러시다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9월 5일자나 9월 1일자 같은 것도 그것도 또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9월 1일자 9월 5일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면서 집행은 사전에 한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기획관리과장 안응균입니다.

7차 교육과정 연수하고 홍보경비는 7월 18일날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9월에 신청을 해서 9월 16일자로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사용결정을 했지만 이번 추경에 물론 계상이 났습니다. 이번 추경은 요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심의해 주시고 다음에 10월에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실지 이번 추경이 확정되려면 10월 중·하순 가야만 확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간사 이기수**

9월 16일자 집행은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9월 16일자로 성립전 사용할 날짜입니다, 그게.

● **간사 이기수**

아직 그러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결재가 난 날짜가 9월 16일로 사용결재를 16일날 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성립전 사용보고가 이게 안맞는 얘기죠.

그러면 요번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내년예산이든지 언제 됐다면 우리한테 승인 받고서 쓴 얘기지 어떻게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성립전 사용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 **간사 이기수**

근데 예산성립전 사용보고라는 얘기는 사실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시일은 촉박하고 하니깐 법규에 맞게끔 해 갖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미리 우리 교육위원회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차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뭘니까 7월 18일이라면 방금 얘기에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에서 시일이 촉박했다고 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넣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잘 안맞는 얘기이고, 또한 가지 우리가 요번 추경에 넣었다면 그 예산은 됩니까? 성립 전에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성립전 사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7차 교육과정 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 확정되려면 10월 중순이나 하순가야 확정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 요번 추경에 계상은 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 **간사 이기수**

이게 들어간 거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 **간사 이기수**

들어간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한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집행은 9월 16일자로 사용결정을 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감사 이기수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년 7월 18일이라고 그런 그것은 이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한 근거가 무슨 문서로 이렇게 온 거보다 그때 회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거다 해서 그 후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소요예산을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이 9월 25일 내일부터 27일까지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도내에 계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7차 교육과정 금년도에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연수입니다.

그것을 그 사업을 시·도별로 모두 균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충북에 위치가 중앙이고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충북에 와서 연수를 받는데, 저희가 일종에 연수를 대행한다고 그럴까요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주관해서 저희가 하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실제 집행은 9월 25일인 내일부터

집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인쇄비 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감사 이기수

그래서 이제 대개 교육위원회에서 권한이라는 얘기가 사업의 성격을 봐갖고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든지 또는 너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일단 걸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한번을 더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또는 늦춘다더라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사전 성립이전에 결국은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본다면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지방재정법 제36조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총칙 제8조라든지 이런 법의 필 이용해 갖고서 잘 이용해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노력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텐데, 그냥 그걸 빙자해 갖고 저희가 볼 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감도 솔직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으셔서 갖고 좀 시일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금 교육국장님도 말씀 하였고 기획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일이 정해졌거나 사업의 추진이 빨리 시행을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다해서 그것이 교육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안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번 예산편성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법으로 보장된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사업은 거의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데, 보조금사업들이 중앙이나 아니면 도쪽에서 예산이 오면은 대개 그런 것들이 기일이 정해져서 어떠한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직접 어떤 기자재를 사 가지고 직접 학생들한테 교육에 투자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좀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줄여가는 방

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인가 그때 시기는 정확치 않습니다 마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갖고 1억 3,000인가 2,000 정도를 그쪽에서 우리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어느 항목에 편성됐으며 처음에 추경에 그게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그 당시에 공동모금회에서 기탁된 성금은 바로 집행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성금을 지역교육청으로 직접배부를 해 가지고 학교회계 편성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이나 어느 쪽에는 일단 들어갔다가 집행한 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온 걸 그냥 내려 준다든지 하면 그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봤을 경우는 지원금으로 해 갖고서 수입을 잡아 갖고서 지출해야지 되지 그 항목이 없어 졌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분명하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얘기

는 그해 후원금이나 지원금이라도 일단 도교육청 예산에 들어와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해 갖고서 그것이 다시 지출돼야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어느 항목이 없어 갖고 그냥 집행해 버린다면 그건 어떻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음번 추경에 편성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금이라고 해 갖고서 일단 예산 속에 들어와 갖고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나서 정확한 지출을 해야지 되지 들어온걸 갖다가 그냥 했다고 딱 떼어 주듯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이에 빚주고 빚놓는 이런 형식으로 소홀하게 지급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3,000이라는 가까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수입을 잡아서 정확히 지출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말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되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하셔서 갖고서 법에 맞고 절차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교원장기회 유학이 있습니다. 초등에 1명이 있고 중등도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3,924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자체 예산이 1,900과 국고 1,900으로 해 갖고서 반반 해 갖고서 파견교사로 보내는데, 중등은 1년차, 2년차 해 갖고서 1년차는 3,924만 6,000원이고 2년차는 4,83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차액이 약 1,114만 6,000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1년차와 2년차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성영웅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차, 2년차 되는 사람들에게 국고에서 증액 교부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른 내용인데 1년차 계신 분하고 가서 2년차 되시는 분들과의 차이는 체제해서 수학하는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계열이라고 그럴까요 그에 따른 경비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게 한 분이 4,900만원을 1년에 지원하는 겁니까? 한 분이죠.

● 교육국장 김전원

초등에 한 분, 중등에 두분입니다.

● 감사 이기수

아니 한 분이 일인당 3,924만 6,000원 이거든요.

● 교육국장 김전원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차가 한 분, 2년차가 두분 아니 2년차도 한 분이거든요.

● 감사 이기수

아니 근데 한 분이 3,924만 6,000원이죠. 그렇죠. 그게 맞죠?

●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 감사 이기수

그런데 2년차는 4,9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수 국비급 파견 교수들이 대개 1,000불을 주거든요. 과거 오래 됐습시다마는 1,000불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많이 늘었을 겁니다마는 사실 환율을 1,200으로 본다면 1,200만원 정도하고 왕복항공료를 포함해 갖고서 대개 파견하는데, 3,900, 4,900만원 일인당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거기서 학위코스를 하는 건지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 교육국장 김전원

학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

위를 하고 있는데.....

● 감사 이기수

아니 그분 학비를 보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파견된 선생님이 가서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코스를 이수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낼 때.

● 교육국장 김전원

석사과정하고 있는 겁니다.

● 감사 이기수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과정에 대한 등록금까지를 다 부담하는 얘기예요.

●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감사 이기수

대개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이분은?

● 교육국장 김전원

미국에 가 있습니다. 2년차 되시는 분은 오클라호마대학에 가 있고요, 1년차 되시는 분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 감사 이기수

영어입니까, 그분들은?

●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전공이 영어입니다.

● 감사 이기수

그런데 만약 2년에 학위를 못했을 경우는 그이후의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환시킨다든지 또는 뭐냐하면 공부를 못

마쳤을 때 그 이후에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뭐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일단은 계약된 기간동안 유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요청을 했을 때 심사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거나 그걸로 그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학위취득을 못했을 때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것 좀 알아 보시고 대학에 파견했을 때 교수를 파견했을 때 1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요.

● 교육국장 김전원

대학교수님과의 비교요?

● 간사 이기수

예. 비교.

그리고 4,939만 2,000원이라는 돈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392만, 3,924만원입니다.

● 간사 이기수

4,839만 2,000원이 2년차죠. 그리고 1년차는 3,924만 6,000원인데.....

● 교육국장 김전원

2년차 되시는 분과 1년차 되시는 분의

차이가 1년차 되시는 분은 금년 1월에 갔기 때문에 8개월 분에 해당되는 거구요. 2년차 되시는 분은 지난 2002년 3월에 가신 거라서 기간이 더 훨씬 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 금액은 가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아주 못박아서 그렇게 파견되는 분은 이 금액 꼭 줘야할 사항인 건지 좀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인 거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간사 이기수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질의하고 그치겠습니다.

조도개선에 3억 1,000만원, 지붕방수에 1억 800만원 매년 이렇게 되는데 조도개선은 해마다 보면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3억 1,000만원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요번 예산에 또 편성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도는 320룩스를 기준조도로 보나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방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에 대한 기준조도는 300룩스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근데 어제 전에 보면 교육위원을 몇 년 했는데 보면 다 뒀다고 98% 이렇게 뒀다가 또 그 다음에는 몇 억씩 이렇게 또 들어가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때 답변이 잘못된 건지 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3억 1,0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얼마가 편성될지 봐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그러면 현재 기준조도 미달이 몇 % 되는 겁니까? 300룩스 이하되는 %가?

● 시설과장 안세열

각급 학교 조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448개교의 보유교실수 1만 6,561실 중 1만 5,921실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이 96.1%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계상된 3억 1,077만 5,000원의 예산으로 5개학교 31실을 개선하면 완료실수 1만 5,952실로 교실수 대비 96.3%가 개선이 됩니다.

개축대상 교실 9개교 110실과 통폐합대상 4개교 35실, 기타 조도개선이 필요치 않은 기타 교실로 사용하는 것이 464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9실을 제외하면 일반 수업을 하는 교실은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 간사 이기수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얼마정도 조도개선으로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그게 과장님 자꾸 조도가 룩스가 올라가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 눈하고 관계되는 얘기니까 조도 문제는 금년예산에서 내년에 아주 100% 완료할 수 있게끔 다른 건 모르지만 편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상향이 되면 상향이 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매번 예·결산 심의를 할 적마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한380여 억원이라는 큰 덩어리를 이제 심의를 하는데 결국은 개략적인 심의에 그치고 말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저 개

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요번에 조례에도 올라왔지만은 교육행정시스템을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시인원을 교육부에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저희들한테 교육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함으로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시스템부분들의 보완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시인원을 추가배치하면 마치 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부나 집행청의 어떤 생각들이 저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매우 낭비가 아닌가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업체에서도 그것이 어떤 제대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하고 나서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이상한 것으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개선한다는 자체는 매우 낭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고 저도 예·결산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겨우 파악한 그런 수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 봐서는 가장 적재적소에 아까 김남훈 위원님도 그러시고 송대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 부분에 요번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시설사업현황 부분에서도 이것이 과연 전체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현황이 어떠한 위에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위원별로 관심있는 분야들만을 또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궁금증이 해소될지는 몰라도 또 다시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차가 올라온다든지 다시 본예산이 시작된다든지 할 때에 이 전체적인 어떤 지도가 없는 상태로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를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청에서 가능하면 이번 시설사업분 그게 보니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혹은 본예산에 시설사업의 중점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번에는 어느 쪽에 편중해서 예산이 되는데 이제까지의 충청북도의 도내 학교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각 학교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료가 있는 위에서 이것이 낭비냐 아니냐 혹은 현장을 가봤을 때 어느 학교를 가보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략적으로 그냥 배수문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얼마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없지 않는 상태이고, 제가 거칠게 살펴본 급식시설부분에 학교에 있어서도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충북여고가 이번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급식시설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현대화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이것을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연감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충북통계연감해마다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

로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된 통계는 거의 없고, 무슨 일급교사들의 어떤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이런 정도의 아주 추상적인 기초데이터 밖에는 그 통계연감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연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주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다 오픈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라도 예산심의 전에 추경예산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간에 이런 현황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들이 가능한지 일단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진옥경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부분을 좀 충분히 제출을 안해서 상당히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 세입을 우선 대분류를 합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시설비 이런 대분류를 한 후에 각 부서에나 각 교육장님들이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오는 많은 예산편성 요구자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감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우

선 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제공드리기가 너무 양이 방대할 뿐더러 무엇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시스템 팀구성 부분은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총정원제 하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교육감한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과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팀 단위라든가 학교에 일반직을 두거나 교원을 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교육감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방대한 시설이라든가, 인적조직이라든가, 업무가 제대로 균형있게 바란스가 맞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현황이라든가 그 구조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중앙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임시로 정원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부서와

합의를 해서 전체 우리 충북교육청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교육지원시스템을 망라해서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앙과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하고 도와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하고 조금 더 거기서 발전되면은 지금 지방분권문제부분까지는 어떻게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연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부팀하고 그 교육부팀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행정을 맡아야 될 그 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물론 넓게 보면 지역사업입니다마는 그 인원을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들이 중앙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조를 변경할 것인가 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교육청단위에서 도단위는 어떻게 하고 특별시단위는 어떻게 하고 직할시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느 부분은 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줘라 어느 부분은 교장한테 위임을 해줘라 뭐 이

런 총 망라적인 게 구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행정의 좀더 발전되고 세분화된 그런 걸로 역할분담이 다시 되지 않겠는가 교육지원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계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분석자료들은 저희들이 약 행정직만 해도 2,82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이 약 만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지역에서 행정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저희들이 뭔지를 알아서 제출해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이런 자료의 공유, 집행청과 또 교육위원회의 자료의 공유가 파트너십 서로 관과 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행정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개선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저는 이제 그런 교육위원들로부터 일반 도민들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을 굉장히 누가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집으로 꾸며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각 부분에서 교재·교구라든

지 또 교단선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항목으로 교재·교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교재·교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또 농고가 있고 농공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괄 액수를 배분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 낭비는 없는지, 저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낭비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이 추경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부분에서 제가 이런 세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부분들은 하나씩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것으로 대신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이름은 컴퓨터를 배정하는 것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기들도 덧붙여지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단선진화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금 저희들 교재가 주로 5년주기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교구도 자꾸 바뀌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전 커리큘럼에 의해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과정이 나올 경우에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 부분이 주로 학교장들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안사고 필요한 부분만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컴퓨터 같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쓰는 기종들은 상당히 현대화된 기종을 쓰는데 학교에서 쓰는 기종들은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교단 선진화 예산이 나가면 우선적으로 컴퓨터 분야나 이런 상당히 발전속도가 빠른 부분을 먼저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만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가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항별 설명서나 아니면은 주요사업설명서만을 가지고는 교단선진화의 개념조차도 저는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컴퓨

터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를 선진화라고 보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있죠.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선진화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단선진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하드도 포함되지만 소프트웨어까지가 모두 포함되어서 종래에 사용하던 학습기자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내용에 따라서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기자재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자료를 쓰면 학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라고 기대되는 그런 첨단기자재를 포함해서 이 교단선진화라고 그러는데, 이 교단선진화라는 명칭에 따라서 종래에 쓰던 것이 빠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기자재를 좀 선진화해서 그 선진화 한다는 그 내용은 종래의 기자재보다는 학습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자재 그런 것을 교단선진화 기재자라고 합니다.

● 진옥경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국한되어 있느냐요? 사립유치원 지원할 때의 교단 선진화라 하면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교육국에서 공·사립학교의 형

평성 차원에서 과거에는 우리 유치원교육이 거의 사학에 의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공교육 쪽으로 유도가 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사학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컴퓨터라도 한 대씩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편성에 넣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뭐 교원단체의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학교안에서의 교사들이 거기에 협조하는 태도가 자세가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시범학교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지정합니까?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여기도 추가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은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금년도 교육시책이나 또는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 뭐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시범이나 그런 실험을 통해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다른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제라고 그럴까 영역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영역 먼저 교육부 지정이 먼저 되고 도지정이 됩니다만 저희교육청 단독의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지정이 되고 교육부하고 관련없이 지정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영역이 결정되면은 이 영역에 따라서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어디로 할 것이냐 지역을 시·군·면소재지 별로 다르게 합니다. 또 남학교, 여학교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이런 영역에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 실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니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연구학교를 대상을 미리 정해놨으니까요 면지역이라든지 정해놨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언제까지 내용을 뭐 해서 희망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내려가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전원

공문을 내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적어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중견교사 전체 교직원협의를 통해서도 결정이 될테고, 일단은 우리학교가 이번에 연구학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영역이 이거 이거다 이 중에 어떤 걸 해야될지 또 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거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올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게 되면 어렵겠지만 그러나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선생님들이 이 연구를 우리가 신청해서 지정된다면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특정교과와 관련된 것이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우리가 한번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솔선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동시에 이

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또 연구지정 더해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가서 더러는 모든 100%의 찬성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더러는 한 두명씩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개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이 학교가 적합하겠다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당학교에 통보를 해서 그후에 계획서를 정식계획서를 또 받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그런 과정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불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지만, 이 과정속에서 민주적이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만약에 연구담당자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라도 전원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합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환경 부분인데 환경에 관련된 관심있는 선생님들 그런 부서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원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효과적인 연구시범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민주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실습기자재라

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첨단학교 개편기
자재구입 이런 내용들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기본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각의 산출근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설명서든지 아니면 사
항별설명서 어느 곳에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
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서식이
라든가 산출기초를 내는 방식이 교육부로
부터 프로그래밍이 설정되어 가지고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
다.

왜 그러나 하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통
계를 잡을 때에 기준을 맞춰서 잡기 때문
에 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산출기초에 있어서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
분을 너무 세분하게 낱다보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당하나 지으려면 기자재가
수천건 들어가는데 과연 그거를 다 기재

할 수도 없어서 어느 학교 강당 뭐 얼마
기준 나오는 걸로 해서 적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단선진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일
단 기준을 학교교장선생님한테 넘기면은
교장선생님이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학교마다 공통적인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각 주임
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선생님들이 교과를 가리키는데 필요한 기
자재를 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는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사실 어느 부분 같으면 경우
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좀더 자세히 풀
었다라면 이해하시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가
급적이면 예산심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 학교회계부분들도 지금 물론 학교자
율성에 맡기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비리라든
지 부정부패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
계에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못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의적인 부
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과 기본 부분 이런 식으로라도 뭐랄까 지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교육위원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면 좋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몽뚱그려져서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이 보고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라도 교육위원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시설에서의 2003년도 본예산에 충북여고가 급식시설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에 현대화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충북여고의 급식시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4억원을 배정했었는데 지금까지 위치를 못정해 가지고서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교지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다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요구가 됩니다.

● 진옥경 위원

무슨 공사비?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토목공사비, 할 수 없이 저희가 요번에 토목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이름을 현대화시설비라고 이렇게 붙이셨는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도 현대화시설비라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토목공사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가 길어지기는 합니다. 마는 교육부에서 지난 4월달에도 학교급식운영개선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급식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는 바람에 김경천, 김정숙, 이규택, 이미경, 이재정,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교육부에다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안을 마련해 가지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제가 요번에 9월 15일로 연기된 직영전환 희망학교조사 교육부에서 내려온 조사결과를 보니까 여기 충북여고도 요번에 나와 있는 2개학교 대성고등학교 이 2학교가 그대로 위탁급식 2007년도까지 인가 계속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

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모든 기타학교에 우선해서 이 학교들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여고는 학교 자체내에 조리실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급식에 추가예산을 반영한 거구요.

지금 현재까지 외부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식이 끝나면은 시설이 끝나면은 내년도부터 바로 직영급식을 실시할 대상학교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가요? 내년 2004년도가 그러면 직영전환 희망년도인가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대성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대성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종전에 구내 식당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조리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은 노후된 강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설비를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근데 이 학교는 2007년도에 직영전환 희망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그럴 때 보편은 이것이 교육부지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게 물론 아이들이 최대수요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은 그러면 이런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어떤 지침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왜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대성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요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액수도 크고 이런 것들을 그저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요번에 조사된 거는 시설이 끝나면 또 저희들이라든가 교육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직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런 액수가 지금 거의 5억에 가까운

부분이라 제가 이런 지원이 마땅한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합숙소가 있습니다. 합숙소가 아니고 지금은 운동선수휴게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차 추경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지금 운동부합숙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꾼 것인지 용도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사업현황에 페이지에 진천부분에 상산초 운동선수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 수봉초에도 운동선수휴게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설 2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난 1차 추경에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합숙소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도 다른 것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합숙소에 초등학교는 합숙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합숙소를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휴게실로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휴게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합숙을 못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네.

● 진옥경 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가능하다고 동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이 자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좀 됐는데요. 한 두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발명공작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지 69페이지이거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69페이지에 보면 발명공작실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도 음성 남신초에서 국고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2003년도에도 또다시 음성 남신초에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실업교육과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발명공작실이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겹치게 되는 이유요.

● 고규강 위원

음성 남신교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잖아. 어떻게 답변을 빨리빨리 못하셔. 남신, 남신 빨리빨리 답변을 못해.

●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요번 2차 추경에서 5

개 학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이 기본으로 지금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 학교만 이제 1억이 배정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오늘 과학실업과장님께서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선수인솔차 가셨는데 추후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확충비 청주시에서 오는 거요, 113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 자치교육경비보조에서 도서확충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과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그러니까 도서확충비가 청주시의 세수의 변동이 없나요? 여전히 똑같은 액수가 작년엔 이어서 올해도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랄까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뭐랄까 오르기도 하는데 청주시 자체의 세수가 변동이 없는지 비율로 하

지는 않는지 액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묶여 있을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말씀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재원이 청주시로부터 청주시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도서확충을 위해서 청주시 예산으로 시장님께서 청주시교육장님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떤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그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노력도 하지만은 시예산으로 주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주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라고 하기에 상당히 저희들 수용자입장에서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이런 제도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어서 지역교육장회의 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재정도 어렵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도서확충비 보조해주시려면 조금 더 단가를 높여 달라고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를 뭐 예산의 몇 %, 1%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는 것이 뭐랄까 번번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고양인가 이쪽에서는 조례로 제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청주같이 여건이 좋을 때 이런 것들을 요구가 있었노라고 말씀드려 주시고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고 지난번에 창신초등학교 갔을 때에 다목적교실 위치가 전체학교가 북향이고 유치원만 유난히 양지바른 곳에 지금 있는데, 그 위치에 그대로 있을 때에 위치변경 부분에서 설계가 이미 뒀다고 하는데 다시 추가설계가 들어가지 않는지 혹시 위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학교위치부분이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다음에 본관을 개축한다든가 다른 건물을 다시 증축할 때에 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지금 모든

학교들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교를 한꺼번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짓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짓다보니까 상당히 건물들이 난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이 거기에 또 있고 학교학생수는 상당히 많은데다 운동장도 그렇게 협소한 편이고 그래서 강당의 위치를 학교장님이 아마 선정을 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설계비가 사실상 이번이 예비설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계하시는 분하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해서 학교운영위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원이나 본 교사를 나중에 증·개축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위치하되 가급적이면 운동장이 많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치변경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조회대와 관련한 답변을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회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사업장이 교실이면 교실, 창고면 창고, 화장실이면 화장실 단위별로 예산단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회대개축 예산단가는 규모는 45㎡ 기준으로 해서 2,210만원을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규모 및 실정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학교규모를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세분화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대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위에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하부에 체육창고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회대 지붕설치는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행사나 지역주민 행사 각종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조회대개축관련 예산은 15개 학교 3억 5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남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붕을 갖다가 지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붕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

회대에 지붕을 씌울 계획이세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지붕관련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필요하다하는 데도 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면 그런 학교에 가급적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아까 사석에서 여쭙았는데 가급초등학교나 아니면 단양 대가초등학교는 학생수가 60명미만입니다. 단양 대가는 48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2,210만원이 배정됐는데 여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교육청에 집행한 결과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어떤 규모로 하셨는지?

● 시설과장 안세열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있다면 그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지역교육청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 학교에서 다시 투입을 안하고?

● 시설과장 안세열

그 학교에 필요한 경우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건 지역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행정감사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조금 힘드시더라도 위원님 다 끝내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교실이라든가 개축사업 등 학교비에 중점 투자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립간 균등발전을 위하여 운호중학교 등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신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에서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나와있습니다.

세입예산서중 건물매각수입과목에서 충주교육청 예성초, 이안초 도로편입 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편입 건물보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제의 드립니다.

둘다 앞이나 뒤나 전부 다 도로편입 보

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상 건물보상금 이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상으로 볼 때 초등전 문직 교장자격연수에 한해서만 이게 지금 이 되는지, 이렇게 된다면 타 교장자격 연수자와의 형평성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종전에는 본인 부담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항인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전문직이외의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에 관련된 연수여비는 해당교육청으로 배분해서 해당학교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전문직관련해서만 본청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입니다.

2003년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3개교 3학년 지원비가 2,400만원을 학년도가 거의 다 지난 이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3월부터 지급되어야만 당초 예산에 지원되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많이 너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청주농업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충주, 제천, 영동지역 그이외의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특수학급의 입학대상자가 입학 후에 입학전이 아니라 입학후에 발생이 되어서 심사를 한 결과 고등학교에 신설되는 특수학급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학년말이나 이렇게 미리 결정이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바로 반영을 했을텐데 심사과정을 거치고 지정하는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학기부터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런 경우는 각 부처간에 협조가 있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예산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38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명칭관계를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시지역 청주, 충주, 제천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과학하고 수학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된 이유는 혹시 이것이 교육부 지정지원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마는 왜 그런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있다가 대답을 해주시고요.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52쪽 고규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흡연 예방교육은 그 중요성으로 봐서 예산이 진짜 고규강 위원 말씀대로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원금중 786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국장님이나 해

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소관에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습용 컴퓨터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9억 여원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약 30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상당히 길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88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환경에 중식지원사업비를 추진하면서 대상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외계층이 조금이나마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면 우리 공·사립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안되어 있지만은 국립학교 또 사립학교까지 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설명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중감내용만 저희들이 표시해놨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중감된 내용만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98쪽입니다.

학교급식감시단 구성현황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감시단이 급식 위생의 안전성 확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운영방법이 어떤지 요거는 지금 간단하면 여기서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만원 수당까지 제공하면서 운영할 정도의 기대가 되는지 기대에 대한 효율성 관계를 분석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가능할까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학교급식감시단 운영은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한 40건에 대해서 3,500여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급식감시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학부모라든가 학운위원님 그 다음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식중독 예방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성은 하반기에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말씀은 상당히 잘 해 주셨는데 감시방안에 대한 세부적 운영방안이라든가 이 감시할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는가?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자격요건은 관련기관과 관련공무원과 또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학교운영위원님 또 학교급식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단체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학교급식의 납품되는 식품의 검수라든가 위탁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글쎄 이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3만원까지 수당제공하면서 이 운영에 대한 제가 일선에 있어 봐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 기대치가 조금 미심적입니다. 좀더 연구해서 시행관계 한 번 검토

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성영웅

말씀하십시오.

● 고규강 위원

식중독예방감시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첨단기기가 다 나와 가지고 첨단기기를 설치하면 모든 음식을 기계에서 다 검수가 되고 안전한가 안한가를 진단이 되는데 그런 첨단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될걸 감시단 이거 뭐하러 합니까? 첨단장비를 학교별로 급식소에 설치하면 그게 다 있는데 지금.....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일일이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학교급식 현장에 납품되는 식품의 질이라든가 조리종사원들이 위생적으로 급식활동을 전개하고 있나 그게 주요활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어느 정도 HACCP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식감시단의 운영관계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방안이 시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뤄볼 때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성교육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부탁 말씀입니다.

음성관계는 1회 추경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 아마 2억 8,827만원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8세대 공동주택 관계인데 이번 추경에도 4세대 1억 6,0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이 확정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거라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같이 음성만 해도 청주권에 있는 분들이 다니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천이나 영동이나 그 어중간한데 단양이나 단양은 공동주택이 몇 개 들어서서 그렇습니다마는 관리국장님께 특별히 제천이나 영동 이쪽으로 오지쪽으로 제천은 도시가 오지가 아니라 교사들이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이 런데 교원공동숙소를 배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직원공동숙소라든가 일반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놓은 발전방안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교원들 분포로 보면 주로 통학권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북부 지역 일부하고 남부지역 그 다음 음성지역은 사실상 우리지역 선생님들보다는 경기 쪽에서 내려오시는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배당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청주에서 거리가 짧지만 숙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근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심을 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2시 56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금일 추경예산안에 학교규모에 관계 없이 조회대 시설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학교규모를 감안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간사 이기수

지금 조회대 문제만 넣으시지 마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편성 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적됐는데 다음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권고는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예산에 안올라왔으니까 시정 요구를 해 갖고 넣어야 되겠죠.

● 위원장 성영용

더불어 사회복지기금이 공동모금된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음기회에 예산안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1,096억 632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헌,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0. .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9.22.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현장방문 (‘03.9.23)
'03.9.24. (수)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2)

서 면 답 변 서

1. 2001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송대헌 위원)
2. 교원장기 해외연수 파견에 따른 연수여비 산출근거(이기수 위원)
3. 발명공작실 설치비 지원현황(진옥경 위원)
4. 2003년도 영재교육 실시 현황(진옥경 위원)

1. 2001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정책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972,000		
	제7차교육과정연수.홍보	52,840		
	자율시범학교지원	20,000		
	중학교 급식시설	1,678,000		
	성교육담당교사연수	6,889		
	제7차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개발	80,000		
	일본교과서왜곡시정과국사교육	13,140		
	학교안전공제회기금확충	111,000		
	제7차교육과정 홍보	10,000		
	시.도교육청자구노력지원	5,594,000		
	공립유치원시설환경개선사업	330,000		
	특수학급,사립특수교교육환경개선	580,000		
	통합운영학교 환경개선	1,600,000		
	공공근로인력 교육환경정비	112,000		
	지식정보화사회의 학교모형연구	182,966		
		소계	13,342,835	
재정보전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634,832		
	지방교육채상환지원	5,702,301		
	소계	9,337,133		
재해대책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11,257		
	재해피해 복구비지원	8,222		
	소계	19,479		
현안사업	기숙사신축(충북공고)	1,710,000		
	기숙사, 특별교실 신축(양업고)	589,000		
	기숙사신축(충원고)	532,000		
	다목적교실(대소초)	800,000		
	다목적교실(서원중)	889,000		
	교사개축(충북여고)	2,000,000		
	다목적교실(의림여중)	889,000		
	학교도서관(옥천고)	502,000		
	다목적교실(중앙초)	700,000		
	다목적교실(청남초)	800,000		
	다목적교실(매포초)	700,000		
	다목적교실(청주동중)	889,000		
	다목적교실(미원중)	974,000		
	다목적교실(감곡중)	671,000		
	도서관증축(증평도서관)	444,000		
	다목적교실(한일중)	671,000		
	다목적교실(서원초)	800,000		
	특별교실 증축(삼성중)	296,000		
		소계	14,856,000	
	합 계		37,555,447	

1-2. 2002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정책사업	교원장기해외연수	17,860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00,000	
	시.도교육감 국외연수	41,700	
	월드컵행사	114,015	
	특수교육환경개선	545,000	
	지방공무원국외연수	22,531	
	제7차교육과정홍보	44,900	
	학교폭력근절교원특별연수	21,072	
	단설유치원설립	1,053,000	
	교육정보화기반구축	82,500	
	교원안전망구축	111,000	
	청소년영상제 제작비지원	1,000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및 대체	1,233,968	
	시각장애 학생점자정보단말기	445,500	
	농어촌교직원사택	922,000	
	학교도서관활성화	32,10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61,920	
	청각장애 학생장애보완도구	39,652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운영	200,0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7,950	
	미래의직업세계2003발간	4,080	
	전국책축제행사	10,000	
	자율학교운영비	80,000	
	소계	5,291,748	
재정보전	기채이자	6,500,301	
	기채보전분	8,664,612	
	기채인센티브	5,298,000	
	기채이자정산분	987,911	
	기채이자및추가보전	566,999	
	저소득층학비지원	2,809,788	
	소계	24,827,611	
재해대책	구제역피해농가학비지원	2,386	
	집중호우재해복구지원	154,279	
	농업재해피해가구자녀학비지원	1,810	
	호우피해가구자녀학자금지원	3,282	
	태풍"루사"재해복구비지원	699,423	
	태풍"루사"피해가구자녀학자금지원	31,601	
	소계	892,781	
현안사업	기숙사신축(단양고)	400,000	
	다목적교실신축및특별교실증축(형석중.고)	1,200,000	
	다목적교실신축및특별교실증축(삼원초)	1,000,000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다목적교실신축(광혜원중·고)	864,000	
	노후교사 개축(대성여중)	1,100,000	
	다목적교실 신축(용담초)	700,000	
	단위학교현안사업(교동초)	10,000	
	단위학교현안사업(보은중)	10,000	
	단위학교현안사업(꽃동네학교)	10,000	
	도서실확충(교동초)	331,000	
	도서관신축(생극초)	600,000	
	도서관신축(세명고)	870,000	
	다목적교실신축(육천상고)	864,000	
	다목적교실신축(이월초)	591,000	
	도서관신축(청운중)	600,000	
	도서관신축(충주여고)	870,000	
	교육문화회관건립(충청북도교육청)	2,000,000	
	다목적교실신축(부강초)	700,000	
	소계	12,720,000	
	합 계	43,732,140	

1-3. 2003.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비고
정책사업	학생흡연예방교재	2,895	
	영어교사심화연수	95,752	
	특수학교치료교재	325,000	
	학교도서관활성화	1,294,686	
	초·중등과학교육활성화	1,017,000	
	녹색학교조성	100,000	
	교수·학습센터운영	242,880	
	교원장기해외유학	64,196	
	03교육과정연수홍보	63,500	
	실고기자재확충및교체	659,649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100,000	
	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	30,000	
	단설유치원설립	1,412,000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추진	912,000	
	영재교육원운영여건개선	71,234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144,000	
	(소계)	9,534,792	
재정보전	기채이자	5,021,000	
	기채보전분	10,765,000	
	지방교육채상환원금	194,069	
	(소계)	15,980,069	
현안사업	교육문화회관건립(충청북도교육청)	2,000,000	
	다목적교실(영동농공고)	755,000	
	학교도서관9음성여중)	600,000	
	체육관(이월초)	300,000	
	직업보도실(청암학교)	740,000	
	학교도서관(화산초)	780,000	
	단위학교현안사업(미원초)	20,000	
	단위학교현안사업(미원중)	10,000	
	교실개축(운호중)	3,866,000	
	다목적교실(삼산초)	890,000	
	다목적교실(충주성모학교)	370,000	
	다목적교실(창신초)	1,100,000	
	다목적교실(대제중)	980,000	
	다목적교실(영신중)	860,000	
	다목적교실(매곡초)	770,000	
	특별교실증축및시설보수(제천농고)	1,249,000	
	다목적교실(성남초)	1,010,000	
	(소계)	16,300,000	
	합계	41,814,861	

2. 교원 장기 해외 연수 파견에 따른 연수여비 산출 근거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비 고
<p>1.교원장기해외유학 연수경비 중 1년차와 2년차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및 산출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는 연수기간이 2003.07.23~2005.07.22.까지로 2003년 예산은 6개월분이며, 2년차는 연수기간이 2002.02.20~2004.02.19. 까지로 2003년 예산은 12개월분이 반영된 것임. - 경비 산출근거는 별첨 교사분 참조 	<p>사항별 설명서 p52</p>
<p>2.교원장기해외유학 연수 기간 내에 석사학위 미취득 시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취득을 사유로 기간연장은 不可 하며, 현재 해외연수 파견이 종료된 사례가 없고 2004년도에 1차 파견자 종료 예정임.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소요경비의 반납조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국내의 사례로 교원대(학위과정) 파견시 학위를 미취득하였다 하여 경비를 반납 받은 경우는 없으며, - 해외연수파견 교사에 대하여는 정기연수상황보고서 학기종료 후 즉시 연수진행상황보고서(매학기별 제출), 국외연수상황 및 학자금 내역보고, 연수진도 보고서, 이수과목내역서, 성적표 사본, 수강신청내역 등을 우편으로 받아 연수 이수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p>3. 교원장기 해외 유학 연수시 교사와 대학교수의 보조경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연수경비 : 덧붙임 참조 - 대학교수의 경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파견을 하는 경우는 없고, 안식년(연구년)차 교수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에서 지원되는 경비도 없으며, 대학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1년에 5,000천원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 단, 안식년(연구년)차 교수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아 해외에서 연수하는 경우가 있음. 	

2-1. 교사와 대학교수의 해외연수 보조경비 비교

○ 교 사

(단위 : 천원)

구 분	2년차(2002년 기 파견자)		1년차(2003년 신규 파견자)	
	산 출 기 초	금 액	산 출 기 초	금 액
학자금	7,500\$×2회= 15,000\$ 환산 : 15,000\$×1,300원	19,500	7,500\$×1회= 7,500\$ 환산 : 7,500\$×1,300원	9,750
체제비	1,742\$×12월= 20,904\$ 환산 : 20,904\$×1,300원	27,176	1,742\$×6월= 10,452\$ 환산 : 10,452\$×1,300원	13,588
의료보험료	110\$×12월= 1,320\$ 환산 : 1,320\$×1,300원	1,716	110\$×6월= 660\$ 환산 : 660\$×1,300원	858
준비금 /이전비		0	준비금 500\$ 환산 : 500\$×1,300원	650
항공료		0	1,800,000원×4명×2회	14,400
추가분 (2회추경분)	744,000원	744	382,000원	382
계		49,136		39,628

※ 관련자료 : 2003.예산편성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산출근거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행정자치부령)

○ 교 수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여 비	왕복 항공료 : 6,000,000원	6,000	
참고자료비	참고문헌 구입비 : 400,000원 자료 복사비 : 100,000원	500	
회 의 비	관련학자들과 회의비 : 400,000원	400	
재료비	컴퓨터구입비 : 3,000,000원 소모품구입비 : 100,000원	3,100	
계		10,000	

- 상기 예산 현황은 안식년(연구년) 교수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고 연구 용역비로 지원 받아 해외연수를 할 경우 지원된 경비임.
(한국교원대 자료)

3. 발명공작실 설치비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설치교	재원구분		계	비고
		국고	자체		
1997	청주중	100,000		100,000	전액지원
1997	삼원초	100,000		100,000	전액지원
1999	삼산초	50,000		50,000	
2000			50,000	50,000	대응투자분
2000	남천초	50,000		50,000	
2001			50,000	50,000	대응투자분
2001	괴산북중	50,000		50,000	
2002			50,000	50,000	대응투자분
2002	남신초	50,000		50,000	제3회추경
2003			50,000	50,000	당초예산
2003	각리초	50,000		50,000	
	죽향초	50,000		50,000	
	영동초	50,000		50,000	
	삼수초	50,000		50,000	
	단양중	50,000		50,000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0	

4. 2003년도 영재교육 실시 현황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구 분	순	설치기관명	학급수	인 원				비고
				과 학	수 학	발 명	계	
영재학급	1	남성초등학교	2	20	20	.	40	
	2	충주중앙초등학교	2	20	20	.	40	
	3	의림초등학교	2	19	18	.	37	
	4	청주중학교	2	20	20	.	40	
	5	충주중앙중학교	2	20	20	.	40	
	6	제천중학교	2	20	20	.	40	
소 계			12	119	118	.	237	
구 분	순	설치기관명	학급수	인 원				비고
				과 학	수 학	발 명	계	
영재교육원	1	청주교육청	1	.	.	20	20	
	2	충주교육청	1	.	.	20	20	
	3	제천교육청	1	.	.	20	20	
	4	청원교육청	4	28	27	.	55	
	5	보은교육청	5	33	39	14	86	
	6	옥천교육청	4	40	40	.	80	
	7	영동교육청	4	40	40	.	80	
	8	진천교육청	4	40	40	.	80	
	9	괴산교육청	5	40	40	20	100	
	10	음성교육청	5	36	30	16	82	
	11	단양교육청	4	32	40	.	72	
	12	교육과학연구원	2	15	20	.	35	
	13	과학고등학교	2	20	20	.	40	
소 계			42	324	336	110	770	
합 계			54	443	454	110	1,007	

